

표지면지

아동 청소년 성매매, 착취의 구조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주 최 :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 십대여성인권센터

일 시 : 2018년 11월 2일(금) 오후 2:00~4:30

장 소 : 이화여대 법학관 232호

PROGRAM

시간	프로그램	
사 회 : 윤이경 연구원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14:00~14:05 (5분)	개회사	Eunice. K. Kim 소장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소장)
좌장 :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14:05~15:00 (55분)	주제 1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이다
	주제 2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토론 1	신수경 법률사무소 울다함 변호사
	토론 2	임수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휴 식		
15:10~16:05 (55분)	주제 3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아동·청소년 성매매
	주제 4	김 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 해외의 성매매 아동 청소년 관련 법제도 현황
	토론 3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토론 4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16:05~16:30 (25분)	종합토론 & 폐회	

목 차

발표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 현황과 대책 1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발표 2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27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토론

- 토론문 1 신수경 법률사무소 울다함 변호사 53
- 토론문 2 임수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61

발표 3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아동·청소년 성매매 69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발표 4 해외의 성매매 아동 청소년 관련 법제도 현황 85
김 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

토론

- 토론문 3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103
- 토론문 4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109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아동 청소년 성매매, 착취의 구조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발표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현황과 대책¹⁾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1. 해마다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사건 일지

1) 2014년 김해여고생 살해사건

2014년 김해 여고생 A양이 가출 한 후 20대 남성 3명과 15살 또래 소녀 4명에게 성매매 강요, 구타와 학대를 당하다 숨지자, 증거인멸을 위해 얼굴에 불을 지르고 땅에 묻고, 시멘트를 부어 범행을 은폐하려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 범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고, 특히 가해자 들 중 십대 소녀들이 있었고, 이들이 A양의 죽음에 상당히 가담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전체를 분노하게 했고, 소년법 폐지 주장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가해 소녀들이 A양과 같이 20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구타와 협박 등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들 중 한 소녀는 모친과 함께 경찰서에 가해자들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성매매를 했다고? 그러면 너도 처벌받는다”고 하는 등 모친 앞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한 사실을 밝히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여 고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2) 2015년 관악구 모텔 14세 소녀 살해 사건

2015년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성매수자가 스마트폰 채팅앱 ‘즐O’을 통해 14세 소녀를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매수 한 후 소녀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1:1 성매매로 알려져 있어, 자발적이라고 여겨지던 상황에서 알선범죄자들의 존재를 정확하게 드러내준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처참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

1) 이 글은 2018. 8. 28.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에서 본 발제자가 발표한 한국 발제문을 주제에 맞춰 재정리하였음을 밝힌다.

내 주었다. 채팅 앱을 통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한 알선 범죄자 3인은 인터넷사이트에 가출소녀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내고 면접을 본 후 전국을 돌며 아이들을 이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알선자 3인은 모텔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그 중 1인은 죽은 14세 소녀를 사랑한다며 꼬여 동거를 하고 핸드폰 어플을 통해 성매수자와 조건을 합의한 후 차량으로 소녀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대금을 갈취하였다.

3) 2016년 만 13세 지적 장애 ‘하은이’를 성매수하여 형사처벌 받은 성매수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년 엄마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자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가출하기로 결심한 만 13세 지적장애아동인 ‘하은이’는 엄마가 심심할 때 채팅하라고 알려준 채팅 앱 ‘친구 000’를 통해 ‘재워줄 사람’을 찾았고, 그 후 성인 남성들에게 1주일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 어렵게 ‘하은이’를 찾았지만 이상증세를 보이는 하은이를 성폭력 피해로 신고하였지만, 가까스로 찾은 6명의 가해자들은 강제나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수사되지 않았고, 성매매로 수사 진행되었으나 떡볶이나 치킨 등을 제공받는 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가해자들을 항고하고 줄기차게 성폭력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가해자들은 전부 성매매로 기소되었다. 2015년 동안 가해자 5인은 성매수로 처벌받았고, 이에 2016년 ‘하은이’ 측에서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또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므로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더욱이 사건 초기 만 13세에 불과한 지적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성매매로 수사한 점이나 성매매 피해지원 시스템의 문제, 현행 법률인 아청법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4) 2017년 성매매 알선된 여중생의 에이즈 감염 사건

2016년 알선자들에 의해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당한 여중생이 성매수 과정에서 에이즈가 감염된 사실이 2017년 밝혀진 사건이다.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채팅을 주고받고, 기록이 오래 남지 않는다는 채팅 앱의 특성으로 이 여중생을 성매수 한 남성들

의 신상파악에 실패했고, 여중생을 성매수한 가해자들 중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전체를 경악과 공포에 몰아넣은 사건이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특징

사례 1)

201*년 만14살 B아동이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 사촌들과 랜덤채팅을 하면서 놀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뒤 채팅사이트로 계속 B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와서 신기해서 계속 채팅을 주고받았다. 남성은 20대라고 나이를 속였고, B는 나이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 후 엄마가 야간근무를 하여 부재중인 늦은 밤, 30대 가해 남성은 아이에게 드라이브시켜주겠다고 꼬여 만나서 몇시간 동안 운전하여 B가 전혀 모르는 곳으로 데리고가 '피곤하니 잠깐 눈만 붙이겠다. 아무짓 안하겠으니 모텔에 가자'고 하여 성폭행하였다. 낯선 곳에 있어 데려다주는 차를 타야했고, 거기서 2만원을 던져주는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집에 돌아왔지만 피해사실을 알릴 수 없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성폭행당했고, 임신까지 하였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B의 학교에 임신 사실을 알려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하였고, 강제로 임신중절까지 하게 했지만 가해자는 B에게 용돈을 벌여오라며 성매매까지 알선하려하였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 중 법정 구속되면서 B에게 떨어질 수 있었지만, B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1년이 지나서야 친구에 의해 본 센터로 찾아왔다. 그러나 성폭력, 협박, 폭행 등으로 고소를 했지만, B가 만 14세의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와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지, 2만원을 왜 받았는지, 돈을 받았으면 성매매를 한거 아닌지 등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 되었다.

사례 2)

201*. 32세 성매수자는 채팅 어플 '앙O'을 통해 알게 된 17세 아동청소년 C와 만나 12만원을 주고 1회 성매수자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때 성매수자는 C 몰래 차량의 블랙박스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촬영하였다. 이후 C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 잘못

됐다고 생각하여 어플을 삭제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지만 성매수자는 어떻게 찾았는지 C의 개인 페이스북에 C의 사진을 올리며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너무 놀란 C는 개인 SNS 개정을 삭제하고 거절하였으나 새로 만든 페이스북에 C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을 미끼로 성관계를 하면 지워주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C는 두려움에 떨며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당일 센터에서는 경찰과 동행, 경찰은 현장검거를 통해 성매수자를 긴급 체포하였다. 체포한 후 성매수자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수많은 동영상을 발견하였는데, 거기에는 또다른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17회, 성인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총 21명과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다.

사례2의 성매수자는 아동청소년이 학생일 경우 훨씬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미성년, 학생들을 주로 성매수 대상으로 노린 후 이를 촬영, 협박해왔지만 C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가 애매한 점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가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나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에서는 성폭력과 성매매를 구분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도움받기 어렵다. 예를들어, 아동청소년 성폭력은 해바라기센터, 경·검찰의 여성청소년과 등에 신고할 수 있지만, 단속과정에 걸리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성폭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기도 어렵지만, 자발적이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점에서 2차 피해 등이 심각하다.

2)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조건만남 성매매를 자발적 성매매로 본다는 점

성인 성매매의 경우, 많은 경우가 업소에 고용된 형태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업주가 실제 존재함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업주에 의한 강요, 강제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해의 경우 90% 이상이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이므로 사실상 업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주에 의한 강요, 강제가 없다고 전제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이나 어플에 접속하여 스스로 방을 만들고 성매매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봄으로써 디지털 매체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자발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매매를 조장, 알선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사이트나 채팅 어플 등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전제는 성매매의 모든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이용하여 실제로 알선업자들이나 포레 포주들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인 성매수자들에게 알선하는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 예를들어, 2015년 관악구 14세 아동 살해사건이 그러하다.

3) 법적 권리 행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 협박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 등의 후견인에 의해 법적 권리가 행사되고 보호된다. 전적으로 부모 등에 의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부모에게, 학교에,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은 가장 두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보통 어떤 범죄적 상황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고,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알선업자나 성매수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예를들어, 성병이나 임신 등의 극단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더욱이 혼자서 산부인과 등의 의료기관을 찾아 갔을 때 생기는 2차 피해(낙인, 비난 등)에 대한 걱정으로 가출을 선택하거나 알선업자, 성매수자에게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알선업자나 성매수자들은 협박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심리를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마주치는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과 너도 처벌받는다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4) 그루밍 수법

성매수 범죄자나 알선업자들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방법은 친근한 말투, 칭찬하기, 선물사주기, 용돈주기, 밥 같이 먹기, 영화 같이 보기, 나쁜 짓 허용하기, 놀러가기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길들여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장악한 후 범죄에 이용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연인관계로 착각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더라도 신고하기를 꺼리고, 단속에 걸려서도 이들의 존재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성매수 범죄자나 알선업자들은 초기

길들이는 과정에서의 주고받은 문자나 사진 등을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에 연인관계의 증거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5) 심각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성장기여서 흔히 불안한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놓여 있다. 즉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멋지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고 결과나 미래를 예상하며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시기를 미성숙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겪게되는 다수의 성매수자들과의 성적 행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힌다. 심각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잦은 자살시도, 알콜중독, 정신분열 등의 증세를 보이고, 특히 돈을 받으면서 원치않는 성행위를 하는 성매수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성행위 자체를 폭력적으로 인지하거나 폭력이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등 이후 정상적인 관계성을 크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위 사례 1의 아동 B는 환청과 환시, 왜곡된 인지로 인한 폭력적 성향 및 대화 불능상태 등이 나타났다.

6) 성매수자들에게 안전한 채팅어플

완전한 익명성과 대화내용의 휘발성, 짧은 기록저장 기간 등 성매수자의 성착취범죄에 최적화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은 무작위 단속의 위험성을 늘 의식하면서 성을 구매해야 하는 업소형 성매매에 비해 알선업자/성매수자들에게는 너무나 안전하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매수 범죄는 특성상 미성년자가 다수 이용하는 채널로써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성매수자들은 성인들에 비해 직업적이지 않은 소녀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소녀들은 협박에 취약하고 결코 혼자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알선/성매수자들에게 각광받는 매체이다. 2017년 6월 현직 경찰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미성년자를 성매수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은 스마트폰 어플이 성매수자들에게 얼마나 안전하게 생각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조장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개인 TV 방송의 특징²⁾

1) 채팅 어플리케이션 특징

(1) 익명성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가입의 절차 없이 닉네임/성별/나이/지역을 임의로 설정한 후 바로 입장한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익명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핸드폰번호와도 전혀 상관없이 닉네임만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익명성은 채팅과 채팅을 통한 만남의 위험성을 높인다. 또한 성별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은 성매수 알선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둔갑하여 채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매우 많다.

(2) 성인인증절차

현재 존재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중에 성매매 정황이 활발히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은 성인인증절차가 없다. 대신 나이 설정을 20세 이상부터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지만 닉네임에 ‘15’, ‘열7곱’, ‘고등학생’ 등의 닉네임으로 아동청소년을 구분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하여 성매수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중 어떤 것들은 성인인증절차 없이 나이 설정을 17세부터 할 수 있게 되어있다.

(3) 대화내용 저장관련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성구매/알선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특징은 대화내용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화내용을 따로 저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도중 일방적으로 채팅방을 나가는 순간 모든 대화내용이 삭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점은 대화창을 들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성구매/알선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매우 유용한 특징이 된다.

2)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에서 작성함

2) 일부 어플리케이션 운영방식의 변화

(1) 캡처 불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중 캡처가 되지 않도록 운영자가 캡처를 막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으로서는 자료를 남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은 성매수/알선자를 신고하고 싶어도 캡처화면을 증거로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된다.

(2) 포인트 방식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쪽지를 보내 채팅을 시작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충전해서 사용해야 하는 방식이다. 포인트 활용은 운영자가 이익을 얻는 주요 통로이기도 하다. '80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처음 쪽지를 보내 1:1 채팅방을 개설할 때만 포인트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답장이 오면서 대화가 이어질 때 쪽지마다 지속적으로 일정 포인트가 소요되도록 되어있다. 이 때 운영자뿐 아니라 채팅을 이어가는 상대방에게도 일부 포인트가 돌아가고 그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특징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더 자극적인 대화를 시도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포인트 활용 특징은 성매매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영상

성매매 정황이 활발히 보이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중 영상채팅도 가능하게 되었다. 남성 사용자가 포인트를 소요해 영상채팅을 하면, 여성 사용자에게 포인트가 충전되고 현금으로 환급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채팅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3) 지속적으로 탈바꿈하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데이트의 명목으로 매우 자주 탈바꿈하고 있다.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자주 바뀌고, 현재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션이 google play에 검색되지 않는 상황이 매우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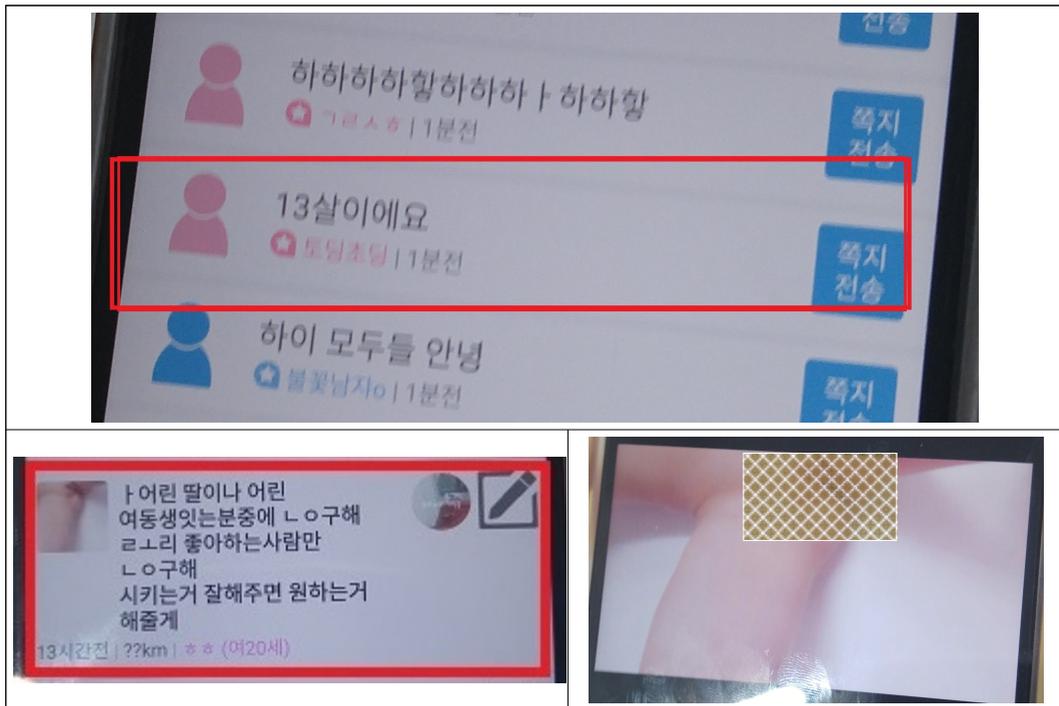
4) 신조어 변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성매매 관련 용어는 대부분 줄임말, 신조어이고 이러한 용어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상의 환경 특징이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금지어로 제재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조어를 계속 생성해내는 이유도 있다. 많이 사용되고 있던 ‘조건만남’이라는 용어도 바뀌고 있는 추세이며, 건전/비건전/반건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건전’은 애인대행/식사 등의 만남을 의미하고, ‘비건전’은 성관계를, ‘반건전’은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전 만남이라고 해서 실제로 ‘애인대행/식사’등으로 끝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최근 사진/영상 등을 공유 받는 것에 대해 대가를 주는 식의 성매매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신조어가 ‘온플’이다. ‘온라인플레이’의 줄임말로써 온라인 상으로 사진/영상 등을 공유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내용의 성매매 정황이다.

5) 이용자들의 변화

(1) 연령대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변화 중에 주요한 것은 연령에 관한 점이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낮은 연령대의 활동 모습이 점점 보이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얼마나 무분별하게 음란한 내용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초등학생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현장도 발견하게 되는데, 첨부자료에는 나이만 언급한 캡처화면이지만, 이 외 초등학생이 ‘노예’등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채팅을 하는 모습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첨부 캡처화면에서도 보다시피, 어린 아기를 성적 대상으로 구하는 것도 볼 수 있다.



(2) 혼혈 여성

최근 ‘혼혈’여성을 찾는 남성 성매수자를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혼혈’이라는 특징을 강조하는 여성 이용자들이 있다. 외국인들은 언어의 한계로 인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혼혈’여성을 원하는 남성들이 보이는 것은 좀 더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6) 성매매 정황이 파악되는 SNS

(1) 페이스북

-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스폰, 조건만남 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파악됨.
-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로 계정 이름을 설정하여 사용 중이고, 실제 성매매 업소 업주들도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업소 홍보를 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들은 페이스북을 통한 채팅 어플리케이션 홍보를 보고 성매수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2) 인스타그램

-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섹스타그램’, ‘오프’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음란물 혹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을 게시함.
- 보통 자위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사람들은 개인 이용자인 것으로 추측됨. 게시자에게 DM(인스타그램 내 다이렉스 메시지)을 보냈다는 댓글이 많은 것으로 보아 성매매 제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조건만남 등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은 성매매 업소 업주가 게시하는 것으로 보여짐.

(3) 트위터

- ‘조건만남’ 및 유사성행위(자위 영상 및 사진 판매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성매매 유인 글이 많이 게시되고 있음.
- ‘조건만남’검색 시 업소 홍보가 많이 서칭됨.

7) 섹시방송

인터넷 검색창에 ‘섹시방송’이라고 검색하면 다수의 사이트들이 검색된다. 성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가입부터 방송 시청까지 모두 무료이다. 아프OOTV에서 영구정지를 당한 섹시BJ들이 섹시방송으로 옮겨가고 있다. 섹시방송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섹시BJ들이 노출 의상을 입는 이유가 의상은 곧 시청자수와 별풍선(섹시 방송마다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지만 현금으로 환급 가능한, 시청자들이 BJ에게 돈을 쓰는 것을 별풍선이라고 칭하겠다.) 수익에 연계가 된다. 시청자들은 갈수록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 방송규제가 없는 섹시방송에서 높은 수위의 방송들이 진행된다. 일부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선결제를 해야만 시청할 수 있는 방송도 있는데, 그런 방송에서는 더 수위가 높은 방송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섹시방송에 다수의 이용자가 몰리는 이유는 어플리케이션 채팅에서는 쪽지를 보내기 위해 포인트를 구입해야 하는 반면 섹시방송은 무료로 시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방송이 24시간 진행되고, 직장인 남성들의 퇴근시간에 맞춰 9시 이후부터 섹시BJ들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점이

다.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별풍선을 쓰는 것에 대해 BJ가 해당 아이디를 직접 언급하면서 반응하는 방식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이용해 성매수자들이 욕구를 채우고 있다.

4. 지원을 통해 본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시스템 및 법률의 문제점

‘일명 하은이 사건’: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2016. 4.)

1) 사건배경

2014년 6월경, 만 13세를 2개월 지난 한 아이가 모친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놀다가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다. 엄마에게 야단맞는 것이 두려워 아이는 가출을 결심하고 핸드폰의 친구OO 앱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 이라는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 성인 남성을 만났다. 또래에 비해 지능이 약간 떨어져 학교에서도 자주 왕따경험이 있던 아이는 갈곳이 없어 그 남성을 따라 모텔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 첫 성경험이었고 너무 무서웠고 혼란스러웠던 아이는 더욱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 앱을 통해 친구를 찾았다. 그후 6명에 달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간음 및 추행을 당했다. 가출신고가 되어 있어 거의 1주일이 지난 후 아이를 찾았지만 아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이의 엄마는 거지꼴이 되어 있고 뭔가 이상한 아이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한 해바OO 아동센터에 성폭력으로 신고한 후 국선변호사 입회하에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하였다. 아이는 그 일이 있고 난후 극도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였고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하였다. 결국 어머니는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야 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정신병원에서도 남성 보호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보호사를 성폭력으로 신고하였다.

사건은 2종류로 분류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가출한 후 당한 성폭력 사건과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2차 성폭력 사건으로 따로 분류하여 진행되었으나 첫 번째 가출후 성폭행

당한 사건은 아이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라는 방을 개설했고, 떡볶이나 치킨 등을 얻어먹었다 하여 자발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성폭력사건이 아니라 성매매사건으로 수사방향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성폭력사건을 지원했던 해바OO 아동센터에서는 성폭력피해가 아닌 성매매 사건이라 하여 아이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며 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아이의 심리상담을 하던 선생님의 의해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연계되었다.

12월이 되어 사건은 하나씩 결정이 났다. 총 6명의 가해 남성이 특정되어 성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각각의 사건이 모두 성매매사건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12월까지 3명의 가해자 중 1명만 아동청소년성매매로 기소되었고 나머지 2명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리 되었다. 만 13세를 겨우 2개월 지냈을 뿐인 아이를 강제가 아니라 하여 성폭력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가를 주지 않았다 하여 성매매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당시 국선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 항고하려했지만, 국선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성폭력사건이 아니라 성매매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이라 더 이상 국선변호사로서 사건을 변호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에서 이 사건을 받아 무혐의 결정된 가해자 2인에 대해 항고를 하였고,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십대여성인권센터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았다.

2) 경과

2014.7.8	해와나무 상담소(십대여성인권센터 심리지원단)를 통해 사건 의뢰됨.
2014.7.14	7.14 당시 피해자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중이어서 외출시, 방문 상담함.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6. 6 핸드폰 액정을 깨트린 실수로 모친에게 혼이 날까봐 가출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워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린 뒤, 이후 만나게 된 남성들 6명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그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들이 진행중임을 파악함. 내담자는 사건 후유증으로 사건 직후인 6. 15부터 상담 의뢰된 이후인 10월까지도 우울증, 불면증, 자살시도 등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퇴원을 반복했고, 가장이었던 모친 역시 사건으로 인해 생업을 중단하며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됨.
2014. 12	6명의 가해자(A, B, C, D, E, F) 중 12. 24 A와 12. 31 B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됨을 알게 되어 본 센터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논의하여 항고장 제출 뒤, 재기 수사 결정됨.

	그러나 A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임. 6명의 가해자 형사 공판 종료 후 본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와 모친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그로 인해 발생한 생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 등의 보상을 위해 각 건마다 본 센터의 법률지원단(서순성, 기희광, 김병희, 배진수, 배수진, 최석봉 변호사)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2015. 2	가해자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이후 2015. 7 본 센터 법률지원단 최석봉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6. 4 일부 승소함(서울동부지법).
2015. 4	가해자 D: 징역 10월,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선고됨. 이후 2015. 6 본 센터 법률지원단 김병희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5. 11 승소함(서울서부지법).
2015. 5	본 건의 피고인 E: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선고됨. 선고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으로 생긴 공백으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되어 판결 결과를 알지 못해 항소를 하지 못함. 이후 2015. 7 본 센터 법률지원단 배진수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6. 4. 28 원고 패소함(서울서부지법).
2015. 6	가해자 F: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검사 측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선고됨. 이후 본 센터 법률지원단 배수진 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2017. 6. 원고 일부 승소함.
2015. 9	가해자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피고인 측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선고됨. 이후 2015. 11 본 센터 법률지원단장 서순성 변호사, 기희광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6. 6. 원고 패소함. 항소하여 2017. 1(?) 일부 승소함.
2016. 5	같은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C와 본 건 E의 판결이 재판부마다 상이하여 패소한 E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 제기 및 항소장을 2016. 5. 16 제출함. 2016. 10. 일부 승소함.
2017. 12 -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던 A의 수사재기 됨, 현재까지 형사소송 진행 중임. 본 센터 변호인 측에서 성폭력범죄로 재기소하기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 사건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지원체계, 현행 법률(아청법)의 문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3) 드러난 문제점

(1) 편의적 수사, 성의없는 수사, 전문성없는 수사

왜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가 됐는지?

-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만 13세였음과 경계성 지적장애아동청소년의 가출 1주일동안 발생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하지 않고 가해자 개개인의 사건으로 수사하여 사건을 전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별사건으로 수사
- 연령 및 장애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단순한 적용
- 스마트폰 어플에 방을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발적 성매매 제안한 것으로 인지(대상청소년 개념 적용)
- 떡볶이, 치킨 등을 얻어먹고, 모텔방비를 지원받았다는 점 등에서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
- 나아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뺏어 모텔비를 가해자가 보태서 내고, 성폭력 후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대가성이 없다고 기소도 하지 않음.

(2) 성매매 사건이라 하여 초기 수사지원을 했던 해바OO 아동센터에서 모든 지원을 끊음 - 아동청소년에게도 성폭력과 성매수 범죄를 구분하는 지원시스템의 문제

(3)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국선번호인 제도

(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에 대한 전문 지원 시스템 부재(상담소, 검경청에 전문 부서 부재 등)

(5) 너무 약한 처벌 수위(벌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이 문제라는 인식. 성인 성매수자의 존재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아동청소년을 우선 관리하겠다는 자세.
- 범죄를 위축시키지 못하는 처벌 수위

(6) 형사상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법원의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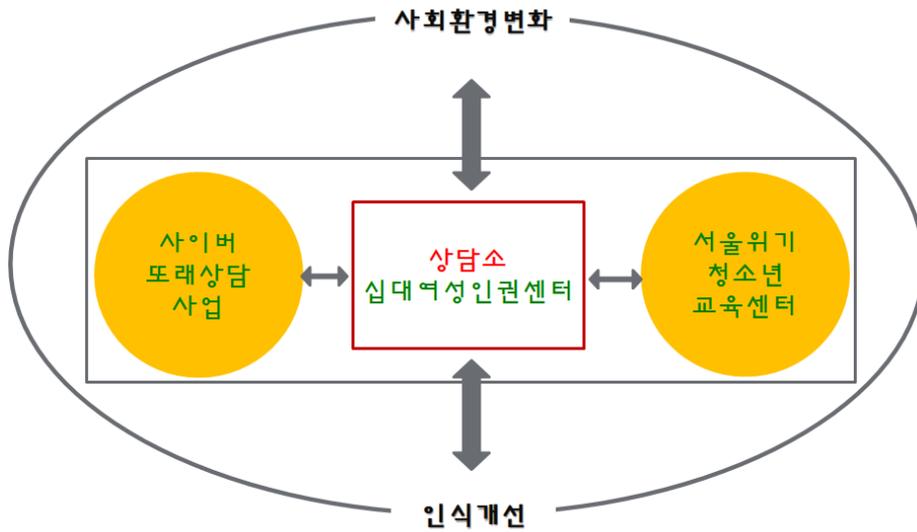
재판부는 우선 피해 아동이 지적 장애가 있는 것 같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해 아동은 아청법상 자발적 성매매를 한 아동으로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것의 의미는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은 '피해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 되며, 그럼에도 성매수자가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사회적 법익'을 위해서지 개인간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럼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성매수자는 이 피해 아동이라고 불리는 아동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5. 십대여성인권센터 통합지원 체계³⁾

그렇다면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은 어떠해야할까. 우리가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는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 및 지원하고, 이들이 건강한 성인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 모든 지원시스템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내담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 안에는 발견-직접지원(법률/의료/심리/주거/학업/일자리)-교육의 내용이 함께 그려져야 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의 통합지원체계는 직접지원에 있어 법률/의료/심리지원을 제외한 주거/학업/일자리지원은 기존 자원을 활용한 연계서비스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통합지원체계는 아니나, 가장 전문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법률/의료/심리지원의 경우 시급하게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시하여 이를 중심으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3) 최희연(2018).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내담자 지원현황 및 유관기관 협력방안", 「2018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서울지역 유관기관 간담회」 자료집



〈 십대여성인권센터 통합지원체계 〉

십대여성인권센터의 통합지원체계에는 사이버또래상담사업,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있다. 사이버또래상담사업은 사이버상(채팅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 등)의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현실공간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더욱 활발하게 거래가 오가고 있으며, 기존의 오프라인 아웃리치로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개입에 한계가 있어 온/오프라인 아웃리치와 정보제공, 대상의 욕구에 따른 연계를 이어오고 있다.

사이버또래상담사업을 비롯해 여러 경로로 발견된 피해 아동·청소년은 대면상담의 과정을 거쳐 직접지원과 교육캠프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법률/의료/심리지원을 통한 직접지원을 위해 60여명의 전문인력(변호사, 의사, 심리치료사)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원은 법률지원단의 변호사 상담/연계를 통해 내담자의 범죄 피해에 대한 고소와 소송대리를 의뢰하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모니터링 한다. 또한, 변호사 소송대리와 더불어 진정서, 탄원서,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검·경찰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한다. 법률지원 외에도 내담자의 성착취피해로 인한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단을 통한 자문을 구하거나, 지원단의 의료기관을 활용한 의료기관 동행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청소년기에 성매수자 및 그 주변인들로 인한

강간, 강제추행, 폭행, 강금 등의 피해경험 외에도 가족의 부재, 방임, 학대, 왕따,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성인기로 접어들기 전 이러한 복합적 원인의 심리·정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지속적인 1:1 심리 치료를 통해 가능하다. 심리지원단은 이처럼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든든한 지지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전문심리치료사로서 성착취피해경험의 재해석을 통한 탈성매매 및 미래설계를 도모하는 데에 힘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은 상담원이 하게 되는데, 상담원은 전문지원의 총괄자로, 혹은 내담자 주변(부모, 교사, 알선자, 구매자, 남자친구, 또래집단)을 둘러싼 관계에서도 필요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판단될시 즉각 개입하여 대처하게 된다. 이는 법률·의료·심리지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담자에게 일어나는 간과하기 어려운 사건에 그때그때 사례회의를 열고 논의함으로써 전문가들과 해결방안을 찾는다. 각각의 지원단은 내담자 지원 외에도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4박5일 청소년성장캠프 강사로 참여하고, 성장캠프는 교육상담원과 아동·청소년들이 4박5일의 40시간 교육과정을 함께 보내는 양질의 시간으로 채워진다. 교육상담원과의 라포 형성 및 법률/의료/심리지원단의 전문교육을 통해 캠프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건강한 어른들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캠프를 시작으로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의미화할 수 있다.

6. 십대여성인권센터 통합지원 사례

201X년 당시 17살이었던 내담자는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알선자의 유혹으로 가출하여 그 집에 감금되었으며, 지속적인 성매수 알선 및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던 중 알선자와 성매수자간 다툼으로 경찰에 신고 되면서 내담자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졌는데, 경찰서로 차량이동 중 내담자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했다. 이에 가해자는 내담자를 연인사이로, 성매매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진술할 것을 강요·협박하였으며, 이에 내담자는 경찰에서 거짓진술 하였다. 결국 내담자는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되었고, 성매매는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내담자는 모에게 그간의 상황을 다 얘기했고, 내담자 모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실로 잘못된 경찰수사에 대한 문의와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사이버포래상담실과 상담소 십대

여성인권센터는 함께 대면상담을 진행하였다. 대면상담 때에 내담자는 지속적인 알선자와 성매수자들로 인한 피해로 정서적인 불안감이 몹시 심각한 상태였고, 어머니 역시 내담자의 피해사실에 충격이 커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에 내담자와 모를 분리하기로 하고, 진행 중이던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성장캠프(4박5일)에 바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캠프기간동안 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털어놓고 이해받는 과정의 개별상담시간을 매일 가졌다. 또한, MMPI검사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과 동시에 또래는 물론 본인을 지지하는 어른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다.

<p>사이버포대상담 사업</p>	<p>초기상담접수(내담자 모), 정보제공 및 초기대면상담진행.</p>	
<p>서울위기청소년 교육센터</p>	<p>청소년성장캠프(4박5일) 및 희망키움과정(2박3일) 교육진행, 내담자 사전·사후 상담을 통해 일상복귀하여 그 후 자퇴하겠다는 내담자를 설득, 학교적응 및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서지원하여 현재 재학 중.</p>	
<p>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p>	<p>법률 지원</p>	<p>〈피의자 조사된 관련 내용〉 - 가정법원 재판참여와 모니터링하며 의견서,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 - 경찰조사 중 받은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진행상황 파악.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면담진행. - 대상청소년으로 사회봉사의무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p> <p>〈성매매알선 및 강요, 강간사건〉 - 법률지원단의 변호사를 선임. - OO지방검찰청에 성매수자와 알선자의 강요, 강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를 죄목으로 고소장 제출. - 6차례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신뢰관계인 동석 및 재판 모니터링.(강간 무혐의) - 항고, 재정신청. - 의견서, 진정서, 탄원서 등 제출. - 동일 알선업자에 의한 성매매알선강요 피해자 4인 추가 발견, 사건병합 재판 - 6년 징역형 판결. 1심 판결 후 가해자 항소하여 진행 중.</p>
	<p>의료 지원</p>	<p>하루 평균 2~3차례의 조건만남과 알선자에 의한 강간으로 부인과 질병이 심각할 것으로 의심되었음. 의료지원단을 통해 산부인과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실시함. 정신과 진료.</p>
	<p>심리 지원</p>	<p>내담자는 성매수 범죄 피해와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호소함과 동시에 심리/정서적 혼란이 야기되었음. 이에 심리지원단(심리치료사)과 총 18회기의 1:1심리상담을 진행함.</p>

7. 사이버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대책(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⁴⁾

1) 사이버 성매매 환경 대응방안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성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데에 있어 초기 경로가 되고 있는 ‘스마트 폰 채팅 앱’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인터넷 카페/채팅을 규제할 관련 법령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재 수단 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다. IT 환경의 빠른 변화는 성매매 유인 환경을 인터넷 채팅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옮겨놓았으며, 최근에는 소통형 영상 채팅, 개인방송 형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유인, 알선, 조장 환경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령은 음란사이트나 음란물을 모니터링 또는 신고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심의하고 이후 음란물로 판정이 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신고를 각하시키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음란물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이버 상의 성매매 알선, 구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경찰과 연계하여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알선자나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사이트가 폐쇄된다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는 IP 주소만 옮기면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알선자나 구매자는 어떠한 흠결도 없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제정될 법률은 우선 채팅 사이트나 채팅(영상) 어플리케이션, 개인 방송 등의 운영자가 성매매 정보의 알선과 성매매 조장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성매매 알선세력이라는 전제가 분명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후 사이트, 어플, 방송 등 사이버 성매매 환경의 폐쇄와 동시에 반드시 경찰의 단속과 수사가 함께 이루어져 성구매자, 알선업자

4) 조진경 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에 이르기까지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상의 성매매 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실행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향후 사이버상 성매매 시장은 현실세계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고, 그 대상은 사이버 환경에 쉽게 부응하는 아동·청소년이 될 수 있어 그 폐해는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이다. 따라서 IT 기술적 진보와 함께 사이버상에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 가능한 전문 영역을 포함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셋째, 빠른 속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 발전시켜야 한다. 단기간의 사업적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기구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아동·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령과 제재수단이 병행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그루밍법’과 네덜란드의 ‘10살 가상소녀 스위트’ 프로젝트는 시사점이 크다. 또한 신고의무자를 채팅 사이트나 앱 운영자까지 포함시켜 성매매 유인이나 정보제공이 발견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든지, 방송통신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KT나 SK 등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성매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자발/강제를 통해 피해자를 구별하고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

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의 동의 여부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인 성매매를 위축 시키기는 커녕 점점 확장시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률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알선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성매매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 상 성매매 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알선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조건만남’을 통

해 성매매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발적이라고 보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리하여 보호 처분하고 있어 성구매자에게 흔히 '너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과 아동·청소년들이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은 동의여부를 떠나 성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인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형태의 법률로 개정되어야 하며, 처벌 또한 구속을 원칙으로 하여 수사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범죄의 경우에는 구속이 무서워서라도 범의를 상실시키게 하는 처벌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경우도 현행과 같이 만 13세 이하로 두지 말고 피해아동·청소년과 동일하게 행해져야 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경우 일벌백계의 의미에서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

3) 법사위에 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현재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1)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보호처분 삭제, 피해자로 지원체계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법률 발의 됨. 2016.08.08. 남윤인순 의원실

(2) 남윤인순 의원실 발의안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더해 장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가중처벌,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공소시효배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김삼화 의원실에서 개정법률 발의. 2017. 2.

(3) 2018. 2. 두 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합안으로 통과되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2018. 3. 법사위에 통합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심의되지 않았고, 법무부에서는 반대의견이다.

(4) 십대여성인권센터 아청법 개정추구를 위한 온·오프라인 정치행동(2017. 12. - 2018. 2.)에서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남인순 의원실에 보낸 메시지 안녕하세요 남인순 의원님. 저의 지역구 의원님이기 해서 반갑네요. 저는 18살 여고생인 동시에 성매수 피해 여성청소년인 박**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출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은 거리보다 추웠습니다.

청소년이고 돈이 없는 저는 갈 곳이 없었고 (쉼터라는 곳을 오기전까지 말이죠.) 가출비용이라도 벌여보자는 생각에 채팅앱을 깔았습니다. 만나자고 채근대는 남자들, 용돈 줄 테니 한 번만 봐달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버는 돈은 다른 노동을 통해 버는 돈보다 현저히 많았고, 그 덕에 저는 며칠을 그나마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돈이 없었고, 결국 성매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보루랄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사실 후회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남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러지 않았으면 맞아야 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추운 거리에서 얼어죽었겠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와 같이 내몰린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ですよ. 내몰린 상태에서 한 선택이 자발적인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이 자발적이라고 물으면 저는 그것이 절대 자발적일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자발적 성매매로 보고, 피해자의 대우가 아닌 가해자처럼,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이걸 성매매라고 부르기도 애매합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를 공부라는 걸 해봤는데 성매매라는 표현보다는 성매수라는 표현이 제 경험을 설명하는데에는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탈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탈가정 후 저에게 돌아온 현실은 너무 가혹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탈가정이 결국엔 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아닌가요? 저는 의원님께 이것이 진정한 보호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법으로서는 저를 포함해 저와 같은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보호를 바랍니다. 섬세한 법 부탁드립니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아동 청소년 성매매, 착취의 구조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발표 2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I. 서론

청소년 성매매가 ‘원조교제’라는 말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준지 2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유입되는 환경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비중 있는 성매매의 유형으로 정착할 정도로 아동·청소년은 유해한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2000년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근거 및 성매매 청소년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여 규정하여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그 어떤 사회적 문제보다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는 일생을 거쳐 장기간 재난에 버금가는 인권침해로서 엄청난 악영향을 낳고 있으며, 폭력, 상해 및 감금과 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살해의 희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초기 경로는 74.8%가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과거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형태가 업소형이었다면, 현재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형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사이버상의 조건 맞춤을 통한 1:1 성매매 형식으로 그 거래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

1) 여성가족부의 2016 성매매실태조사 발표자료에 의하면 채팅앱 37.4%, 랜덤채팅앱 23.4%, 채팅사이트 14% 등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조직에 의한 알선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이다.²⁾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 있어서 현행 법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고 보호처분 등을 내리고 있어서 아동·청소년들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었을 경우 현행법에 호소하기보다는 알선업자의 지배를 보호로 생각하여 이에 의지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줄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절시켜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현행 법제를 검토하고 아동·청소년의 환경 및 인권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법제 개선방안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법제

1) 현행 법제

현행법상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을 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아동·청소년과 개념상 구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 법 제38조제1항에 의거해 보호 및 재활을 위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9조제1항에서는 검사는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법원 소년부

2) 2015년 3월 성매매에 이용되고 살해된 서울 관악구 14세 소녀 살해사건의 경우에도 성인 남성 알선업자 3인이 사이버 상에서 조직적으로 조건만남을 알선했음을 볼 때, 최근 사이버 상의 조건만남은 알선업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십대 소녀들이 알선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들 성매매 알선자 3인은 인터넷사이트에 가출소녀들을 대상으로 구인광고를 내고 면접을 본 후 전국을 돌며 아이들을 이동시키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갈취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살해된 소녀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고 자신들은 단지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였지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에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 또한 제45조에 의하면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을 위해서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항에서는 성매매 알선·유입된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 제5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성매매피해자 등 그 가족의 취학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지원시설에서 청소년지원시설은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해 자립지원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청소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처우는 달라지고 있다.

현재 국가는 성매매에 대해 처벌과 보호지원이라는 이원공조정책을 쓰고 있다. 성매매 정책에서 피해자는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기존 범죄피해로서 가해자의 강요행위, 특수관계인의 중독가해행위, 알선유인행위, 인신매매행위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자이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발과 강요라는 이분법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고 피해자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체계도 다르다. 즉 대상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국선변호인 선임,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배려, 증인진술시 영상녹화,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피해자에 대한 폭력위기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을 하는 통합지원센터도 이용하기 어렵다.

3)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로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4) 2017년 현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전국 199개소, 청소년지원시설은 전국 14개소, 자활지원센터는 전국 11개소 등이 있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 적용되는 법제와 지원서비스>

구분	피해아동·청소년	대상아동·청소년
적용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유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와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
수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 조의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소년부 송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 조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0 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보호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이 법 제36조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이 법 제37조 피해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치료 이 법 제41조 피해아동청소년등을 위한 조 치의 강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호시설의 업무 등 이 법 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의 설치 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5조 보호시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상담시설

현재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있다. 즉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미성숙한 발달단계에서 경제력이 있는 성인들에게 이용된 것이므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아 보호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성매매 의사가 있는 아동·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 보호 및 지원기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11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29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199개소), 청소년지원시설(14개소), 자활지원

센터(11개소) 등이 있다. 이러한 기관을 통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교육, 상담, 자립자활을 통해 일자리제공 등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 등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기관이 아니라 위기청소년, 일반 성인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이므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소, 아동복지시설, 대전소년원, 소년원학교, 소년분류심사원 등이 있다.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

구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대상	성매매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캠프 운영, 상담, 사례 관리 -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현장방문 - 지원시설로의 인도 또는 연계 - 성매매피해자들의 구조 -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성매매예방홍보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긴급구조,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활성화 - 두드림 존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식제공 - 상담 및 치료 -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자립, 자활 교육 실시, 취업정보 제공 - 기술교육 - 기초생활수급 수령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성매매 여성 자활역량강화 - 전업준비를 위한 훈련 - 공동작업장 등 일자리 제공 - 취업 및 창업 지원 - 외부자원 활용 연계망 구축 - 취업창업자 사후관리 등

과연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인 의사로 성매매를 행하는 것일까,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호처분이 처벌이 아닌가, 현장에서 보호처분이 형벌로 작용하지 않는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현황과 그 과정에서의 인권상황 등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5)

5)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의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본다: 정현미, 장명선, 김현아, 조진경, 이기연, 박숙란(2016),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의 대상 설문조사는 103명에 대한 것으로 19세 미만의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만으로 한정하였고, 관련 시설이용자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시설인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생활시설), 상담소, 위

Ⅲ. 아동·청소년 성매매환경 및 인권침해 실태현황

1. 가출 경험 등 현황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 103명의 연령은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인데 이들의 재학 여부를 보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62명(60.2%)이었으며, 나머지 41명(39.8%)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87명(84.5%)이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가출경험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만 15~16세’의 경우가 90.0%로 가장 높고, ‘만 13~14세’ 81.8%, ‘만 17~18세’의 경우는 80.8% 등의 순서로 높았다.

가출경험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처음 가출 연령을 보면 ‘만 14세-16세’까지는 47명(54.0%), ‘만 13세 이하’에 가출한 경험자가 22명(25.3%), ‘17세 이상’이 12명(13.8%) 등으로 평균 나이는 14.4세로 낮게 나타났으며 만 13세 이하도 22명으로 25.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처음 가출한 이유를 보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63.2%)가 가장 높았으며, ‘가족 간 불화, 폭력, 폭언 때문에’(58.6%), ‘친구나 선후배와 놀고 싶어서’(46.0%), ‘공부하기 싫어서’(21.8%), ‘집안 형편이 어려워’(11.5%), ‘학교에서 따돌림 때문에’(10.3%) 등의 순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과도한 입시중심의 경쟁주의, 성적지상주의 등 심대문화 빈곤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소위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이 아니라 전체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과 예방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가출 후 지냈던 장소를 보면 ‘친구, 선후배 집’(85.1%)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62.1%), ‘찜질방’(41.4%), ‘애인 집’(40.2%), ‘쉼터 등 보호시설’(39.1%), ‘노숙’(31.0%), ‘월세방’(18.4%) 등의 순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웃리치 등 홍보와 정보제공을 여관, 모텔, 찜질방 등에서 해도 좋을 것 같다.

성매매 업무담당자들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1순위 응답률은 ‘가정불화’(37.8%)가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이유’(23.9%), ‘성인들의 유도’(18.7%),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14.7%), ‘또래 문화’(2%) 등의 순이다.

2. 폭력 등 인권침해적 환경

기청소년교육센터 등(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협조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최근 2년간 폭력, 따돌림 등의 경험을 보면 ‘놀림 당하거나 심한 욕을 먹은 적이 있다’가 5점 척도 평균으로 2.3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유 없이 맞은(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2.24점),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2.03점), ‘그룹채팅이나 인터넷에서 악플이나 집단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1.79점), ‘성폭력 또는 집단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1.67점) 순이다.

폭행가해자를 알아보면 ‘친구, 선후배’(65.0%)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아빠’(32.5%), ‘모르는 사람’(27.5%), ‘친엄마’, ‘애인’과 ‘가출팸’(12.5%) 등의 순서였다. 이를 보면 원가족으로부터의 폭행을 당하는 비율이 높으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행은 가출 후 노숙,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했다는 응답이 높았던 점과 연관되어 있어서, 불안정한 주거상황이 폭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모르는 사람’(57.9%)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친구, 선후배’(26.3%), ‘친아빠’, ‘애인’, ‘기타’가 각각 10.5% 등이다.

3. 성매매 현황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13세 이하’(8.7%), ‘14-16세’(57.3%), ‘17세 이상’(32.0%) 등으로 응답자의 66%가 14-16세로 중학생 시기에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나이인 13세 이하도 8.7%로 높았다.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는 ‘잘 곳이 없어서’(35.0%)가 가장 높았으며,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32.0%),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31.1%), ‘화장품/옷 구입을 위해’(30.1%), ‘친구의 권유’(29.1%), ‘호기심에’(27.2%),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26.2%), ‘배가 고파서’(25.2%), ‘강요에 의해서’와 ‘유혹비가 필요해서’(15.5%),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서’(11.7%),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술에 취해서’, ‘성폭행 후 자포자기해서’(6.8%) 등이다. 이는 입시중심의 경쟁사회, 미천한 자본주의사회, 외모중시 사회 등 우리사회의 빛나간 모습들이 십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인문화의 범람이 십대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친구의 권유나 강요에 의한 경우는 주로 또래포주로 친구, 애인, 알선자이기도 하다.

가출 후 언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가를 보니 ‘가출 다음날-1주일 이내’(31.7%), ‘가출 당일’(23.8%) 등 절반 이상(55.5%)이 가출 후 1주일 이내에 성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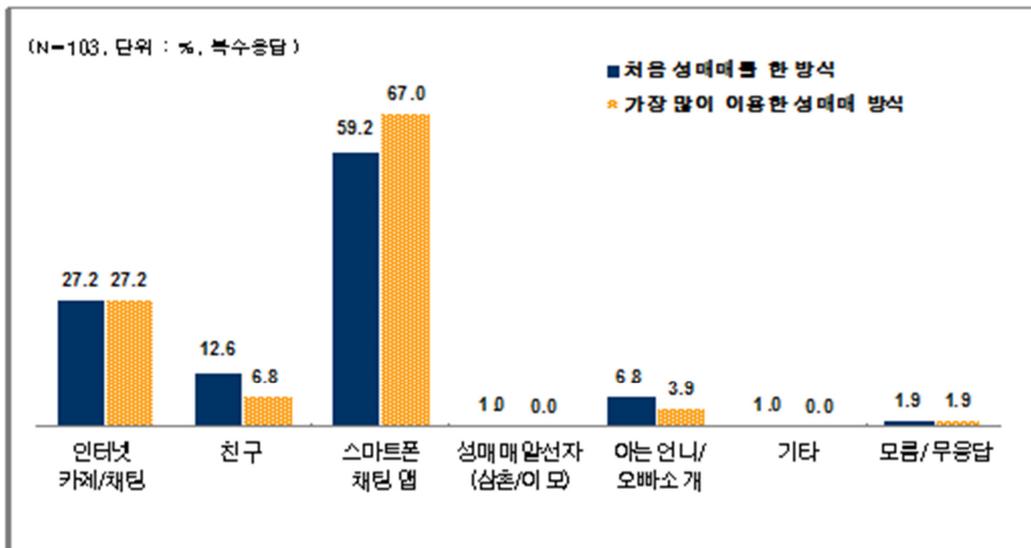
타났으며 가출하지 않았으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이 54%로 나타나 가출 예방과 가출후의 이들에 대한 초기지원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경험한 성매매 유형으로는 ‘1:1 조건만남’이 88.3%로 매우 높았으며 ‘애인대행’(13.6%), ‘키스방’과 ‘노래방’(9.7%), ‘보도방’(8.7%), ‘대딸방’(7.8%), ‘단란주점, 룸살롱’(4.9%) 등이다.

또한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도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카페/채팅’(27.2%), ‘친구’(12.6%), ‘아는 언니/오빠 소개’(6.8%) 등의 순이다.

성매매 업무 담당자들도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형으로는 ‘조건 만남’(8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매로 유입되기 쉬운 경로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61.4%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채팅/카페’(23.5%), ‘친구’(9.2%) 등의 순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장 위험(폭력/진상)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49.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는 언니, 오빠 소개’(15.5%), ‘인터넷 채팅/카페’(14.3%), ‘성매매 알선자’(13.1%) 등의 순이다.⁶⁾ 따라서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그림〉 성매매 방식(복수응답)



이들의 하루 최대 성매매(성행위) 횟수로는 ‘1회’(33.0%), ‘2회’(32.0%), ‘3회’

6)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251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이다

(13.6%), '4-9회'(14.6%), '10회 이상'(3.9%) 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하루 최대 평균 성매매 횟수는 2.7회로 나타났다. 성매매 1회당 받은 금액은 최소 평균 91,000원에서 최대 평균 185,000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사실상 알선자가 있는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아동·청소년들이 받는 실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낮다.

4. 성매매시 인권침해 실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와 인권침해를 보면 성구매자로부터 부당한 경험을 한 비율이 80%로 매우 높았다. 그 내용을 보면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61.2%)로 가장 높았고, '약속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았다'(53.4%), '성 매개 질환(성병 등)에 감염된 경우가 있다'(47.6%), '성매매 전 제시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46.6%), '선불금을 주지 않았다'(38.8%), '욕설이나 폭행, 협박을 하였다'(36.9%), '변태 성행위를 시켰다'(28.2%),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19.4%),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15.5%), '강간을 하였다'(14.6%),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가 있다'(7.8%), '돈을 빼앗겼다'(3.9%), '낙태를 강요하였다'(2.9%) 등이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성구매자로부터 당한 인권침해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금품)을 빼앗겼다'(4.00점)였으며, '욕설이나 폭행, 협박을 하였다'(3.74점), '강간을 하였다'(3.73점),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3.58점), '성 매개 질환에 감염된 경우가 있다'(3.54점), '성매매 전 제시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3.51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가 있다'(3.50점) 등의 순이다.

성매매 알선자와 관련된 부당한 경험들을 살펴보면, '약속한 대로 돈을 배분해 주지 않았다'(32.0%)가 가장 많았고,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하였다'(29.1%), '쉬고 싶을 때나 아플 때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 '욕설·폭행·협박을 하였다'(24.3%), '생리 중 성매매를 강요하였다'(23.3%) 등이다.

이와 같이 성구매자와 성매매알선자로부터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당한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하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가출 후에는 대부분 성매매를 하게 될 것이다'가 3.03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약 성매매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고소하지 않는 것이 편할 것이다'(2.2점), '성매매를 하면 진상을 만날까 봐 두렵다'(3.91점), '성매매를 좋아서 하는 또래친구들은 없다'(3.66점), '성을 파는 또래친구들은 사회의 피해자이

다'(3.4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출이 성매매로 연결되므로 이를 예방하거나 초기지원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은 경험은 51.5%이며,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부모 또는 주변의 신고'(39.6%)가 가장 높고, '경찰단속'(30.2%), '자수'(24.5%),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13.2%), '구매자신고'(9.4%) 등의 순이다. 경찰이 성구매자로 단속을 시도한 경우도 나타났는데 이는 경찰관이 오히려 단속을 빌미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단속방법의 획기적인 전환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였다'(3.08점), '조사과정에 대해 잘 설명하였다'(3.19점), '상담원 또는 친한 사람과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2.83점), '조사를 마친 뒤 앞으로의 절차와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2.98점),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2.63점) 등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것은 '무시하는 태도'(43.4%)가 가장 많았으며, '범죄자 취급'(34.0%), '폭언, 협박, 강압적 태도', '가해자와의 합의 유도'(13.2%), '개인정보 유포'와 '집으로 갑자기 찾아옴'(5.7%) 등의 순이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와 '사적 만남 요구'가 있었다는 비율도 1.9%로 나타나 인권침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이 가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성희롱/성추행 경험이나 사적 만남 요구 등은 명백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예방이나 침해시 구제시스템을 구축 등 보다 철저한 인권보장이 요구된다.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범죄자 취급을 한 정도에서 '매우 그렇다'(10%), '조금 그렇다'(30%), '그렇다(40%) 등이며,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46.6%)가 가장 많았으며 '모르겠다'(32%),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했다'(18.4%)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성매매 업무담당자들은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다'(51.0%)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처벌이다'(22.3%) 순으로 나타났다. 처벌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지만 처벌과 같기 때문에', '대상아동·청소년들이 절대 보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아서', '보호처분 자체가 성매매를 했다는 낙

인이 되기 쉬워서’,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쉼터 입소의 강제성’ 등으로 응답되었다. 이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40.2%로 ‘없다’는 의견 24.3%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호처분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당사자들이 느끼는 생각과 업무담당자들의 이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보호처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6.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성매매와 관련한 지원/도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료 상담’(77.7%)이 가장 높았고, ‘일상생활 상담’(72.8%), ‘신체건강검진/치료’(67.0%), ‘정신건강상담/치료’(57.3%), ‘학업지원(일반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51.5%), ‘일시 쉼터지원’(43.7%), ‘경찰, 검찰 조사 시 상담원 동석’(39.8%), ‘가족상담/가족치료’와 ‘장기쉼터/주거지원’(38.8%), ‘아르바이트/취업알선’(35.9%) 등이다.

현재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정책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학업지원’과 ‘경찰, 검찰 조사시 상담원 동석’(4.14점)이 가장 높았으며, ‘정신건강상담/치료’와 ‘장기쉼터/주거지원’(4.13점), ‘아르바이트/취업알선’(3.94점) 등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의한 피해를 보면 ‘동의 없이 보도함’(38.5%), ‘성매매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림’(30.8%) 등이며, 성매매 사실을 ‘친구나 학교에서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4.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성매매 알선자가 접근해 오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욕구도는 ‘일자리’(3.86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교육’(3.84점), ‘의료지원’(3.82점), ‘학업’(3.81점), ‘정서적 지지’(3.80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법률지원’(3.55점), ‘쉼터·그룹홈·월세집 등 살 곳’(3.13점),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상담’(3.02점) 등은 상대적으로 필요 정도가 낮았다.

이에 반해 성매매 업무담당자들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요구도를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5점 척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4.03점), ‘취업교육 지원’(4.01점), ‘의료지원’과 ‘법률지원’(4.00점), ‘일자리 지원’(3.96점), ‘학업지원’(3.93점), ‘쉼터/그룹홈/월세집 등 살 곳에 대한 지원’(3.91점),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상담’(3.80점) 순으로 나타났다.

IV.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1. 법제 정비

1) 대상아동·청소년개념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법적 보호지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대상이 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검사에게 송치하고(제38조제2항), 검사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법원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결국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의 1호부터 5호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은 일정한 수준에서의 활동제약을 수반하고 6호부터 10호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은 일정한 신체의 자유를 제약한다.

사실상 성매매에 유입된 대상아동·청소년의 경우 성매매와 성폭력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해도 가출 후 숙식을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폭력 경험으로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서 성매매로 연루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성매매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 처벌이 아니 보호처분을 내린다고 하나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을 처벌로 여기고 있고 현장에서도 보호처분을 벌미로 성매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형벌은 아니라고 해도 형사제재 수단의 하나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형사피의자가 거쳐야 하는 수사절차 등을 동이하게 거쳐야 하며 철도, 강도 등 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청소년과 동일한 종류의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수사경력 자료로 남고 성매매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강제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성매매 예방효과보다는 수사기관의 조사, 보호처분 및 그 이행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 과정에서 입은 인권침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상습적인 성매매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선택에 의한 자발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본권 침해의 정도가 적은 상담·교육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체제로 보호지원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피해자로 분류되고 있는데,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피해자로서의 법적 보호 내지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따라서 대상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서의 법적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7)

2)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명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의사가 자발인가 비자발인가에 따라 자발적인 성판매자는 성매매자로 처벌되지만, 비자발인 성판매자는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피해로 구분하면서 대상아동·청소년은 사실상 자발적 성판매 아동·청소년으로 구분되어 피해아동·청소년과는 달리 취급된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 과연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성매매를 위해 인신매매당하거나 강요되지 않으면 모두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피상적인 이해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가정과 학교의 부적응 요소, 환경적인 열악한 요소, 성인 성구매자에 의한 폭행·협박 혹은 소위 ‘진상’들에 의한 시달림과 같은 인권침해적 요소는 심각하다. 성인과 달리 일반적으로 제한된 의식주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원하였다고 하여 과연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할 수 있을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의하면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004년에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용돈 및 유희비 마련 등을 위한 자발적, 상승적 성매매 청소년까지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 지원하는 것은 성매매의 재발방지와 청소년의 원활한 가정복귀라는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법무부도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일률적으로 피해자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는 대상/피해 혹은 자발/비자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법제도적·사회환경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처사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폭력과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모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⁸⁾

사실 ‘매매’의 법률적 의미를 보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63조). 그런데 이러한 ‘매매’의 당사자인 ‘매도인’ 개념에 아동·청소년이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물건과 같은 재화의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5조). 그런데 심지어 그보다 더한 가치를 가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처분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매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용어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매매’라는 단어는 아동·청소년이 성인을 성매매로 유인했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내포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에 캐나다에서는 최근 20여 년동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로 새로운 법률 조항들이 만들어지면서, 먼저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에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우리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문제는 ‘성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의 인식전환을 위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8) 남인숙의원이 2016.8.8.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의하였다

3)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철저와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형량은 2000년 법 제정시보다 매우 강화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특별형법의 엄벌주의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처벌에서의 문제점은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성매매의 단속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단속이 되어 성인 성구매자가 범망에 걸리더라도 높은 법정형에 비하여 처벌은 솜방망이 식으로 가볍게 그치고 마는 데 있다. 낮은 수위의 처벌로 인하여 성인 성구매자들이 성매매의 단속 및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엄격한 처벌규정 자체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법정형의 상한은 중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한을 상승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만의 관대한 처분으로 끝나지 않게 하자는 것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의 의미를 가지므로 벌금형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성인 성매매는 비범죄화로 가는 추세가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어느 나라이든 허용되지 않으며, 주요 범죄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며, 성장 시기에 따른 특수성 속에서 성매매는 인격침해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구매자, 알선업자들은 평균 만 14.7세의 중학생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관련 범죄자 검거인원은 줄어들고 있고 2014년 성매수로 처벌된 건수는 385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로는 당국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 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응체계 구축

1) 성매매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독립부서 필요

현재 아동·청소년정책 업무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관련 정책은 청소년보호 업무가 아니라 성매매정책업무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매매 피해여

성의 보호와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성매매 피해지원 목적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적부터 성인 성매매 여성과는 다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집결지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시작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알맞지 않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가출,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등 광범위한 위기 청소년 지원정책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청소년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권익증진국에서도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등에 대한 관리는 권익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권익기반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권익증진국의 성매매 정책은 성인 성매매 피해를 중심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성매매지원시설을 제외한 청소년 지원에 관한 모든 체계는 사실상 청소년 가족정책관에서 담당하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부서는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내 독립적인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전 경·검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전담부서 설치 필요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문제는 대상과 주제에 따라 나뉘어져 있어, 사실상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지원 문제는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부재할 뿐 아니라 분산되어 있어 장기적 전망과 계획,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고, 생활질서과에서는 업소 단속 중심의 수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피해자들은 강력계나 형사과, 지능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착취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과 실질적인 지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자들의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내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담부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성매매 아동·청소년 전문기관 설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전문기관은 없으며 현행법상 보호시설(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과 상담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신고접수, 교육프로그램, 상담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은 위기청소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성인 성매매 피해자(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전담기관이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기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는 없다. 기존의 성매매상담소 중 주요 거점별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보호지원 분야를 특화하여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급증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므로 이들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매매에 이용된 후 아동·청소년이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쉼터 34명과 아동복지시설 4명을 합한 38명(36.9%)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원가족 복귀가 가능하지 않아 쉼터나 아동복지시설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다양한 주거지원의 가능성, 생활시설만이 아닌 이용시설을 통한 지속적 보호, 지원 등 여러 다른 지원체계가 보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이들의 발견, 상담, 교육, 보호,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통해 성매매에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환경 구축

1) 노동시장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청소년의 경우 취약한 환경에서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터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전한 구직 경로 확보와 노동인권 보장이 절실하다.

근로청소년들이 현재의 일자리를 구직할 때 활용했던 주된 구직경로는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전문 소개사이트로, 2명 중 1명(50.3%)이 이용하였고, 이 경로가 아닐 경우 ‘먼저 일하고 있는 친구 또는 아는 선후배’(23.9%)를 통해 일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대부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아동·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인들과 동일하게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안전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으로의 편입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학교 밖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에 상응하는 실태파악과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등 상대적으로 자신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학교 밖 가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접촉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자립생활관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출이 전체 103명 중 87명으로 84.5%이고, 처음 가출 나이 평균 연령이 14.4세로 가출이 저 연령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가정폭력의 연관성이 확인된 결과, 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가정 내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줄여나가야 한다.

현재 아동의 복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범죄

9) 김지경·박창남 (2014),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92면

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그런데 아동 학대사건은 범죄의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결국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입법이 이루어졌다.¹⁰⁾ 그럼에도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는 2010년의 경우 9,199건, 2014년에는 17,782건까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¹¹⁾ 따라서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 더불어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체적 폭력 및 언어적 폭력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 내지 전문가의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을 조기발견하고 전문가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개선지원정책이 요구된다.

4.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

1) 사이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형으로 ‘조건만남’이 88.3%로 다른 성매매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채팅’ 27.2%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 또한 ‘스마트폰 채팅 앱’이 67.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인터넷 카페/채팅’ 27.2%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인터넷 카페/채팅을 규제할 관련 법령이나 제재수단이 매우 거의 없는 실정이다. IT 환경의 빠른 변화는 성매매 유인 환경을 인터넷 채팅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옮겨 놓았으며, 최근에는 소통형 영상 채팅, 개인방송 형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유인, 알선, 조장 환경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령은 음란사이트나 음란물을 모니터링 또는 신고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심의하고 이후 음란물로 판정이 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신고를 각하시키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음란물 분야에 초점

10) 아동의 복지뿐만 아니라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는 성인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341호)’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2014년 1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11) 보건복지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50면.

이 맞춰져 있어서, 사이버 상의 성매매 알선, 구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폐쇄되어 진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경찰과 연계하여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알선자나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사이버 상의 성매매 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실행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향후 사이버상 성매매 시장은 현실세계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고, 그 대상은 사이버 환경에 쉽게 부응하는 아동청소년이 될 수 있어 그 폐해는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이다. 현재 영국의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는 좋은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령과 제재 수단이 병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고의무자를 채팅 사이트나 앱 운영자까지 포함시켜 성매매 유인이나 정보제공이 발견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든지, 방송통신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KT나 SK 등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성매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성구매자와 알선 조직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

아동·청소년들은 성구매자와 알선업자들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와 착취를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하루 최대 ‘1회’ 34명(33.0%), ‘2회’ 33명(32.0%), ‘3회’ 14명(13.6%), ‘4-9회’ 15명(14.6%), ‘10회 이상’ 4명(3.9%)이 성매매에 이용됐고, 하루 최대 평균 성매매 이용은 2.7회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하루 최대 평균 성매매 횟수는 만 13-14세가 3.2회, 만 17-18세 3.0회, 만 15-16세 2.2회의 순이었다. 안전한 가정에서 따뜻하고 충분한 지지와 배려를 받고 성장해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하루에 평균 최대 3명의 성구매자와 성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역으로 하루 평균 최대 3명의 성구매자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하루 10회 이상이라고 답변한 아동·청소년은 4명으로, 그 중에 만 13-14세 1명도 포함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성구매자들은 흔히들 화장을 하고 옷을 성인처럼 입어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들 한다. 그러나 만 13-14세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성인 흉내를 낸다고 하여도 그 연령대를 성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모르는 성인과 아동·청소년이 돈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하루에 1회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이며 성착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의 동의 여부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인 성매매를 위축시키기는 커녕 점점 확장시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법 상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알선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발적이라고 보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리하여 보호처분하고 있어, 성구매자에게 흔히 ‘너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과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은 동의여부를 떠나 성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인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형태의 법률로 개정되어야 하며, 처벌 또한 구속을 원칙으로 하여 수사하여 아동청소년의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에는 구속이 무서워서라도 범의를 상실토록 하는 처벌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나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인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오히려 철저하게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및 약취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 세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벌어지는 성범죄를 점점 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정수사 금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실태조사 결과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단속을 시도한 경우, 실제 단속시기는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 4명(57.1%),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2명(28.6%), 모름/무응답 1명(14.3%)로 답변하였으며,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었다는 응답이 2명(28.6%), 없었다는 응답이 4명(57.1%), 모름/무응답이 1명(14.3%)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단속된 경우에 대해 2명이나 대답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성구매자로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

수사기관에서 합정수사의 대상을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로 해야 한다. 만약 합정수사의 대상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정할 경우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로 당한 피해에 대해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움츠려 들게 하는 것이며, 움츠려 든 상황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의 방향의 탓으로 돌려지고 성매매알선자나 성구매자의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 없게 하는 근본이유가 되며, 위 실태조사에서 나온 바대로 경찰관들의 범죄양성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정수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V. 결론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해마다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비 및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우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는 것을 개정하여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 등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이들의 자립과 자활 그리고 상담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 시나 재판시에도 이들에 대한 인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에 아동·청소년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건만남의 수단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규제강화가 이루어지고 이들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성구매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피해는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청소년 특성에 부합되는 상담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또래 상담원 등을 양성하여 24시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서도 이들의 자립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숙박형태로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성인의 성매매와의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청소년에 맞도록 자활지원센터 등이 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단순한 성매매가 아닌 성착취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정책과 지원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한 사회로의 회복이 이루어져 한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아동 청소년 성매매, 착취의 구조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

토론문 1

신수경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

토론문 1

신수경 법률사무소 울다함 변호사

1. 대상아동·청소년 조항 삭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추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청법」규율의 주안점을 ‘성을 파는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매수자’에게 두고, 성매수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것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규정은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피해자가 아니라 선도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다.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과의 관계에서의 불합리 발생

「아청법」 제38조 제1항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1)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 보호처분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1) 성매매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특히 성매수의 대상이 된 청소년²⁾에 대하여, 알선·유인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성매매처벌법」과 대상청소년의 경우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가능한 「아청법」이 함께 작용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알선·유인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 아동·청소년만이 유리한 처분을 받게 되고, 「성매매처벌법」만 적용되었을 경우 ‘성매매피해자’로서 처벌되지 않았을 알선·유인된 청소년은 보호처분이 가능한 대상청소년이 될 위험³⁾에 처하게 되어 실질적인 불합리가 발생한다.

〈표1〉 청소년이 성매매의 대상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형사제재 여부

		성매매처벌법	아청법	적용
알선·유인 X	자발적	처벌 O	처벌 X / 보호처분 O	보호처분 O (유리)
	비자발적	처벌 X	처벌 X / 보호처분 □	보호처분 □ (피해아동·청소년 여지)
알선·유인 O	자발적			
	비자발적			

②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는 문제

「아청법」제39조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후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보호처분 부과 가능성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하고, 이를 악용하는 성구매자와 알선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되는 등 성매매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끔 만든다. 이러한 보호처분 사실상의 처벌⁴⁾로서 성매수 ‘피해자’ 보호와는 그 취지가 상이하다.⁵⁾ 더욱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범행 또는 범행을 행할 우려를 전제로

2) 「성매매처벌법」은 자발적이라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청소년을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4호 다목)

3) 실무상 초기 법률조력 등의 지원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가정이다.

4) 「소년법」제3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그 입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소년의 보호와 구제에 있으나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소년법」제53조가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실상 ‘처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보호처분 결정이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되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이후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5)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선도보호를 위한 위탁보호처분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우가 아니라는 것은 강제부과라는 성격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는 시

하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개념과 중첩될 수 없다⁶⁾고 할 것이다.

또한 성매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절도, 강도 등 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청소년과 동일한 종류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위의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과 위와 같은 처분이 가능하도록 된 대상아동·청소년 정의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겠다.

③ 자발·비자발 판단의 한계 및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배제 우려

성매수 범죄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발적으로 보여지나 그 이면에 가정해체와 사회안전망 미흡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곤란하거나 경제적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고, 아직 가치판단이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육체·지적·경제적인 취약성을 매수자가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성매수 범죄에 있어서 자발·비자발의 판단은 매우 전문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실무상으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주장되지 못함으로써 단순한 진술 등만을 통하여 판단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로써 대상아동·청소년이 된다면,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주어지는 다양한 지원 및 보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입법안⁷⁾이 계류 중인 바 조속한 통과를 기대해 본다.

설의 입소 및 교육프로그램의 이용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다(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5조).

- 6) 강지명(2013),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제7권 제2호, 아시아교정포럼, 171면
- 7) 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1478,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 2005598,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현재(2018. 2.) 두 법안은 통합안으로서 법사위 계류중,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 피해자국선변호사 조력의 문제

성매수범죄에 있어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초기 법률조력은 이들을 현행법상 대상 또는 피해아동·청소년의 범위로 포섭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 아동·청소년들에게 사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결국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국선 변호사제도를 통한 초기 조력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청법」 제30조는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만 범죄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선정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에서 「아청법」 제13조의 성매수 범죄 자체를 제외⁹⁾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의 여지를 봉쇄하고 있다.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된 후, 소년법원에서 변호사인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애초에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고려한다면 초기 수사단계의 법률조력이 핵심이 될 것이므로, 성매수범죄 관련 아동·청소년에 대한 초기 법률지원으로써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조력제도를 입법화 하여야 한다.

3. 사이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입법의 필요와 한계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양상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과 입법의 필요성에는 매우 동감하나, 사이버 성매매의 경우 그 양상이 다양하여, 입법을 통한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위임할 경우에 있어

8) 「아청법」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9) 「선정규칙」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입법으로 유형화된 사이버 성매매를 회피한 또 다른 형태의 범죄 발생을 결과적으로 독려하게 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이에 원론적이지만, 해당 입법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집단을 포괄하는 연구 등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 등의 실무진과 협의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아동 청소년 성매매, 착취의 구조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

토론문 2

임수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토론문 2

임수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성매수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¹⁾을 바라보는 법무부와 법원의 현재의 주류적 인식은 ‘보호대상’이라기보다는 ‘비행을 저지르는 골칫덩어리’인 것 같다.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특별히 봐줘서 보호처분 정도로 끝내게 해 주고 보호도 해 준다’는 식의 시각이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이자, 국가의 아동보호의무를 외면하는 처사이다. 성매수범죄 대상 아동·청소년은 ‘성범죄’ ‘피해자’일 뿐이다.

성매수범죄 대상이 되는 피해는, 아이의 신체가 침해되고 정서와 인격이 파괴되어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성인이 되어서도 일생에 거쳐 부정적 영향이 남을 만한 중한 피해다.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의 성을 취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 성학대(child sexual abuse)이고, 명백한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²⁾이다.

지구상 대부분의 문명국에서는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는 물론, 성인이 아동을 상대로 성교 내지 성행위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범죄로 취급한다.

우리나라처럼 13세 이상 아동을 상대로 성교를 해도 아동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들어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의 성에 대한 보호를 방기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³⁾ 지구상 어느 문명국에서도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지점에서 그 아동더러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되고 있어 민법상 "미성년자" 및 소년법상 "소년"과 같은 범위이다. 즉 18세까지의 아이들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정의되고,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정의된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되어 있다.
- 2) 영국은 아동 성매매(child prostitution)이라는 용어를 2000년대 초부터 '아동 착취(child exploitation)'로 교체해 오다가 2015년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을 개정하여 완전히 '아동 성착취'로 규정하고 있다. 조진경 외,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2017), 52-53면.

직접 선택을 하라고 결정권을 주는 예는 없다.

예방접종이나 알콜, 약물 기타 해로운 기호품에 대해 우리가 아동에게 선택 여부를 물었던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심지어 교복이나 머리길이에 대해서조차도 아동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호해 왔다.

단지 예외적으로 아동의 성 만큼은 아동의 손에 자유를 주어 주며 책임을 전가해 놓고, 어른이 이를 착취한다. 수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연애금지가 학칙인 것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학생들끼리 연애는 못하게 하면서 어른과 성교를 한 것에는 너의 선택의 자유이니 존중해 주겠다는 셈이다.

과연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가. 아동에 대한 보호는 방기한 채, 아동의 성을 이용하고 착취한 어른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가.

201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66%가 16세 미만 나이에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사회에서의 성매매라는 것은 결국 아동에 대한 성착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범죄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법제는 이러한 자각 없이, 아동의 성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성매수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 아동을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고 있다.

즉 아청법은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과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근거 없이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한 구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동 대상 성매매는 성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 3) **성교행위 동의를 최저연령기준이 15세인** 나라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우루과이, 북한,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티오피아.
16세인 나라는,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홍콩,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스위스, 미국(앨라배마, 알래스카, 코네티컷, 조지아, 하와이, 캔자스, 켄터키,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메인,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키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주), 알제리, 안도라, 아르메니아, 바하마, 벨기에,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칠레, 쿠바, 도미니카, 핀란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요르단,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러시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남아공, 대만,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17세인 나라는, 아일랜드, 미국(텍사스,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뉴욕, 미주리, 일리노이 주).
18세인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부탄, 이집트, 가봉, 아이티, 인도, 필리핀, 세르비아, 터키, 우간다, 베트남, 미국(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노스다코타, 오리건, 테네시,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
 이상의 내용은, 김한균,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3), 112면.

이러한 우리 법제의 근본적 결함은 사실, 성인과는 전혀 다른 ‘아동의 특성’ 자체를 모르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아동은 그저 아직 나이가 차지 않은 성인이 아니다. 아동은 미흡한 성인, 또는 부족한 성인이 아니다.

각 연령이나 발달 단계마다 다른 특징을 가진 다른 인간이다. 성장과 발달 과정에 있을 뿐 그 자체로 온전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성장과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상 성범죄 구성요건은 성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그러한 아동의 특성을 제대로 알거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침법은 주로 가중처벌을 규율하고 있을 뿐인데, 만약 아동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다면 성인과는 다른 구성요건으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정의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성범죄 구성요건의 디폴트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디폴트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 없다. 아동의 성을 취하기 위해 굳이 물리력을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동은 생존을 위해 유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의존적이고 순응하도록 태어난다.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끊임없이 어른에게 순종하고 순응하도록 훈련된다.

아이들은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어른을 쉽게 따르고 어른의 지시에 쉽게 응한다.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돈이나 먹을 것, 잠자리 등을 제공하고 아이의 성을 착취하기란 너무나 수월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나 따뜻함, 상냥함 같은 것이라도 그것을 주고 성을 착취하기가 쉽다.

국가는 이러한 ‘아동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적합하게 아동을 보호할 법제도를 구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근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인기를 의심할 만한 정도로 구멍이 있다.

단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른에게 성을 제공할 수밖에 없을 때, 국가와 사회와 부모는 그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그 아이들을 피해자로 선언하여 보호해야 하며, 알량한 제공품을 대가로 아이들의 성을 착취하는 어른들에게 그것이 심각한 범죄임을 주지시키고 엄격한 처벌을 함으로써 아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반대로 아이들만 비난하고 문책하고 가두어 두려한다.

아동의 성을 바라볼 때 금지와 허용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의 측면에서 보는 것도 좁다. '아동의 성의 건강하고 온전한 발달과 성장'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통합적 관점이 절실하다.

국가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 범죄와 사회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정이나 부모로부터도 보호해야 하고 때로는 아동 자신의 의사로부터도 보호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하지만, 보호의 영역에서 선택의 자유를 논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성은 보호의 영역이지,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 아동의 성은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통합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해 주신 조진경 대표님과 장명선 교수님, 두 분의 성매수범죄 대상 아동의 현황과 적절한 보호·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과 정책 제안에 대해 모두 적극 동의한다.

특히 그 중 현재의 핵심 안건인, 성매수범죄의 대상 아동·청소년을 완전비범죄화하여 '피해아동·청소년'으로써 보호·지원 하려는 아청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조진경 대표님과 장명선 교수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상향을 위한 형법 제305조 개정안⁴⁾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전 회기처럼 임기만료로 폐기시키지 말고 이 또한 신속히 검토를

4) 현재 김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788)이 상정되어 있다. 형법 제305조 중 "13세"를 "16세"로 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조화를 이루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2016. 7. 11. 접수되어, 2016. 7. 12.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 11. 8. 제 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결과 상정되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5) 한편, 2016. 7. 12.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830)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동법상 가중처벌 대상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가중처벌'만 가능할 뿐 13세 이상 아동과의 성관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 공백 부분을 메워 주지는 못한다.

재개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다만 장명선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정책 제언 중에, 행정부든 사법기관이든 아동성매매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 특히 독립적인 부서로 설치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소 걱정이 있다. 실무에서는 관할 내지 업무 분장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적시 보호나 사건의 적시 처리에 곤란을 겪으며 이리저리 핑퐁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서든 사법기관이든, 성매수범죄 대상이 된 아동 역시 ‘성범죄’를 당한 ‘피해’아동으로 취급하도록 해당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업무관련자들을 교육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 아동에 대한 성매수범죄 사건을 성폭력 사건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 중 하나의 특수 분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한다. 성매수범죄 대상이 된 아동 사건을 성인 풍속 범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국가기관의 시각 자체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집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절대 집을 나가지 않는다. 가출하여 밤을 넘길 정도의 아이들은 그만큼 집이 고통스럽기 때문인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은 절대 자신의 소중한 성을 팔지 않는다. 돈 몇 푼에 성을 팔 정도의 아이들은 그것 외에는 그 몇 푼을 얻을 방법이 없고, 그 몇 푼이 그날 밤 그 정도로 생존에 절실하기 때문인 것이다.

아이들이 가출하게 되고 성을 착취당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보지 못한 채, 아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들의 성매도 비행이 늘고 성매도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만 보는 법무부의 인식은 인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매우 우려스럽다.

성매수범죄를 막을 방법은 일차적으로 성매수범죄자들을 엄단하는 것이어야 하고, 쉽게 성매수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차단하고 환경을 봉쇄하는 것이어야 하지, 그 대상이 된 피해 아이들을 보호처분하는 것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보호처분’을 처벌로 인식하지 보호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보호처분으로라도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인식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이다. 보호를 위해 아이들을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감금해 두어야

한다는 것인가.

보호를 하려면 아이들에게 적절한 돌봄과 교육, 사랑이 제공되는 ‘가정(home)’이나 ‘쉼터(shelter)’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지, 구금시설(detention center)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 되면 안 된다.

모쪼록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아동을 성매수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심각한 범죄이고 아동 성학대이자 성착취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길 바란다.

하루빨리 법무부와 국회는 아청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성매수범죄 대상으로써 성착취를 당하는 피해 아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를 기대한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착취의 구조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발표 3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아동·청소년 성매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

2018. 11. 2.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목차

1. 아동청소년 인권과 성매매
2.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국제적 기준
3. 국제인권규범 이행 실태
4. 개선 방안

아동청소년인권과 성매매

- 성매매의 본질은?
- 아동청소년의 특성은?
-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수성은?
- 왜 아동청소년 인권인가?
- 실제 지원사례

아동청소년인권과 성매매

■ 성매매의 본질

[다수의견]

-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
-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음

[일부 위헌 의견]

-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판매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 이들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
- 10대에 성매매로 유입된 청소년들은 의존적이고 취약한 상태에서 빈곤 등의 이유로 성산업 구조에 편입되어 성인이 되어도 별다른 대안 없이 성매매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음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 2 결정)

아동청소년인권과 성매매

■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수성

아동청소년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며, 가출 상태 생활비와 숙박 장소를 제공받기 위해 성매매에 나서는 점 고려해야 이들의 가출에는 '가정 해체, 가정 내 폭력 및 성학대, 성폭력의 경험'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많다.

이런 이유로 가정으로부터 탈출한 아동청소년들이 생존에 필요한 안정적인 생활수단을 얻기란 쉽지 않고, 결국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성매매에 유입되게 된다.

심지어 가출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 중에서도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성매매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 1 결정)

아동청소년인권과 성매매

■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수성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하는 자들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
가출 또는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궁박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숙식제공이나 금전적 유혹으로 이들을 끌어들이고
영리의 수단으로 삼아 착취하는 자들로서
그 표면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못지 않게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 1 결정)

아동청소년인권과 성매매

2000.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 「윤락행위등방지법」 성매매 아동청소년: ‘윤락행위자’, 처벌의 대상
- 청소년 성구매자, 성매매 조장 중간매개행위자 강력하게 처벌
- 성매매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 보호·구제하는 장치 마련
- **청소년 인권 보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
-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 강화

아동청소년인권과 성매매

2000.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청소년성보호법은 기존에 성매매 청소년들도
윤락여성 범주에 포함되어 처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에서
규율의 주안점이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겨가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 1 결정)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국제적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아동 성착취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법적 접근을 위한 출발점으로 제시
-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한 최초의 인권협약
- 아동은 비아동과 다른 특별한 이해와 권리 향유, 특별한 보호 필요
- 1989. 11. 20.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 당사국 196개국(2017. 기준)
- 대한민국은 1991. 12. 20. 발효(조약 제1072호)
-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국제적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제19조 아동의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 사법적 개입의무
- 제34조 모든 형태의 성착취, 성적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당사국의 의무**
-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등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국제적 기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일반논평 (CRC General Comments)

- 2003. 7. 1. 제4호 “유엔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
- 2007. 3. 2. 제8호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 2011. 4. 18. 제13호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동의 권리”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국제적 기준

아동의 매매 ·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1996. 8. 스웨덴 스톡홀름 개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반대하는 제1차 세계 총회’(World Congress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해결 위한 최초의 논의
- 2000. 5. 25. 유엔총회 만장일치의 합의로 채택
- 성착취 피해자 중 여자아동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 차지, 성매매 아동의 국제적 이동이 급속도로 증가 우려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국제적 기준

아동의 매매 ·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대한민국 발효일 2004. 10. 24.(조약 제1688호)
- 아동청소년의 합의가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나 대가를 위해 성적 행위를 수행하도록 아동을 찾아내거나 알선 및 제공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국제적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대한민국 총 4차례 심의
제1차 심의(1996. 1.)
제2차 심의(2003. 1.)
제1선택의정서 및 제2선택의정서 이행 제1차 심의(2008. 5.)
제3-4차 심의(2011. 9.)
제5-6차 심의(2019. 9.)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국제적 기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 1. 제2차 심의 최종견해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 아동 성착취에 관한 아동친화적 방법에 대한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사, 검사의 교육 및 훈련
- 성착취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재통합 프로그램과 서비스 보장
- 성매매 권유자, 성매수자 대상 예방조치 개발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국제적 기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8. 6. 제2차 선택의정서 심의 최종견해

- 선택의정서 언급된 어떤 아동도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 아동피해자 법적 대리 기능 개선 위한 소관당국 충분한 재정·인적지원
- 성매매 피해아동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성매매 피해아동 이익 결부 소송절차, 이들의 견해와 욕구 및 우려사항이 제시되고 고려
- 판사와 변호사 대상 선택의정서 조항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국제적 기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10. 제3-4차 심의 결과 권고

-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우려 표명
-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성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인수하는 모든 행위 법적 금지
- 아동 성착취 효과적으로 기소
- 대한민국 국내법이 제2선택의정서 제2조 및 제3조 명시된 범죄 모두 포함하도록 개정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국제적 기준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2000. 유엔총회 채택
- 성매매를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규정
- 당사국의 의무조항 명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적용 포함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국제적 기준

아동의 매매와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대한 특별보고관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결의하여 임명
- 전 세계 아동착취 조사,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보고서 유엔총회·인권이사회 제출 의무
- 모든 형태의 아동 매매와 성착취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불법화하는 법률 제·개정함으로써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체계를 마련
- 국내법이 성학대 및 성착취 아동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
- 아동은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할 것

국제인권규범 이행 실태

-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년
- 달라지지 않는 반복된 내용의 권고
- 이행의무자(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무응답
- 국제인권규범을 외면한 채 제자리걸음

성매매 아동 범죄자 취급 및 처벌 X

성을 구매, 유인, 권유, 알선, 강요하는 비아동청소년 기소 및 처벌

사법·행정절차 차별받지 않고 조력 받을 권리 보장

성매매 아동의 견해 존중 및 고려

성매매 아동을 만나는 종사자 교육 및 훈련 ...

국제인권규범 이행 실태

-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부재 / 인력의 전문성 부재
- 성매매는 성폭력? 성범죄? 감춰진 성매매: 예산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스템 배제
- 아동,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배제: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온라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 전담기구 부재
- 아동청소년의 권리, 특성 고려한 정책 부재

국제인권규범 이행 실태

-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 아동을 수단으로 성구매자 단속하는 경찰 수사
- 수사 및 재판과정 처벌 받을까 위축되는 아동: 욕구와 견해 표현 어렵고, 표현되더라도 실제 고려되거나 존중되기 어려움
- 성매수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변호사, 경찰, 검사, 판사 등 관련 종사자를 위한 전문교육 부재

국제인권규범 이행 실태

[피해아동청소년]

- 해바라기센터
- 국선 피해자변호사
- 성폭력피해자 지원(상담 · 의료 · 법률 · 수사 · 보호 · 사회복귀 등)
- 위기청소년교육센터 X (?)
- 소년부 송치 X
-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피해상담소 (아동 X)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쉼터

[대상아동청소년]

- 해바라기센터 X
- 국선 피해자변호사 X
- 성폭력피해자 지원 X
- 위기청소년교육센터 O
- 소년부 송치 O
-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피해상담소(아동 X)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쉼터

국제인권규범 이행 실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아동청소년”

- 알선, 유인, 권유, 강요되지 않은 자?
- “대상아동청소년” vs. “피해아동청소년” 구분: 수사기관 (주관적)판단 의존
- 검사의 교육·상담 이수명령, 「소년법」상 소년보호재판: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수한 맥락 고려한 치료와 재활, 지원 처분 X
-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 배제(해바라기센터, 국선 피해자변호사)
- 배상명령 신청 불가능
- 손해배상청구 기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10185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단228013 판결

개선 방안

- 국제인권규범 이행 모니터링 기구 설치
-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스템 연계
-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연계(부처 간 연계와 협력): 사회구조적 원인 고려
- 성매매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마련(예산 편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전담 통합지원센터 설치
-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 등 관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수사기관 전담 부서 마련
- 대중 인식개선 캠페인: 성착취로의 인식 전환
- 온라인 성매매환경 관련 법 개정 및 대책 수립

감사합니다



사단법인두루

장애인권 | 국제인권 | 아동·청소년인권 | 사회적 경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아동 청소년 성매매, 착취의 구조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발표 4

해외의 성매매 아동 청소년 관련 법제도 현황

김 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

해외의 성매매 아동 청소년 관련 법제도 현황

김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



해외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제도 현황

김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I 목차



- I. 국제법과 국제기준
- II. 해외 입법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 III.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



- I. 국제법과 국제기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국내적으로, 양국간 다국간으로 취해야 한다.

- 가. 아동을 불법적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나. 아동을 성매매나 기타 불법적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 성매매: (아동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나 대가를 위해 성적 행위를 수행하도록 아동을 구하거나 알선 및 제공하는 행위

제8조: 형사절차에 있어 당사국의 의무 규정

제9조: 아동 성 착취 예방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피해아동 지원 규정

I 팔레르모 의정서



-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UN 의정서

제3조 인신매매

가.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납치·사기·기만,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이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또는 혜택의 제공, 접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채용, 이송, 운송, 은닉, 인수를 의미한다. 착취는 최소한 타인의 성매매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또는 서비스, 노예제도 또는 노예제도와 유사한 관행, 예속과 장기 적출을 포함한다.

I 팔레르모 의정서



나.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무의미하다.

다.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또는 인수는 이러한 행위가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라.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I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2012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위원회는 당국에 권고한다.

- a)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b) 성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 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 아동의 성 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

I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2012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위원회는 당국에 권고한다.

- a)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b) 성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 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 아동의 성 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



II. 해외 입법례

I 영국



- 만18세 미만 아동의 성 구매 행위 = 성 착취, 즉 아동 학대
- 관련법
 - ✓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가해자 처벌
 - ✓ 아동법(Children Act 1989): 피해자 보호
 -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아동보호체계 편입, 지역사회에서 보호

I 영국



- 중범죄법 (Serious Crime Act 2015)

개정 전	개정 후
(소제목)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를 통한 아동학대	(소제목) 아동 성 착취를 통한 아동학대
제48조 아동 성매매 혹은 아동 포르노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제48조 아동 성 착취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제49조 아동 매춘(child prostitute) 또는 외설물과 관련된 아동을 통제하는 행위	제49조 아동 성 착취와 관련된 아동을 통제하는 행위
제50조 아동 성매매 혹은 아동 포르노를 알선, 조장하는 행위	제50조 아동 성 착취를 알선, 조장하는 행위

I 영국



-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아동 복지와 아동 보호를 위한 다기관 협력 지침
 - ✓ 2006년 아동학교가족부 (2010년 교육부로 개편) 주도
 - ✓ 법적, 공적인 부분에 있어 각 부처와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내용 정리
 - ✓ 아동 성 착취는 “아동 성 학대의 한 형태로, 한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아동을 강요하거나 조종하고 속여
 - (a) 피해자가 필요해 하거나 원하는 것과 교환
 - (b) 가해자를 위해 혹은 조력자의 금전적 유리함이나 신분 상승을 위해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발생

I 미국



▪ 관련법

-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법
(Domestic Sex Trafficking Deterrence and Victims Support Act)

I 미국



- 18세 미만의 성매매 행위는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 일반 비행청소년이 아닌, 종합적인 특별 서비스 제공 대상자
- In re B. W. (Supreme Court of Texas. 313 S.W. 3d818)
 - ✓ 만13세 아동이 운전하고 있는 경찰관을 불러 구강성교 제안하고 20달러를 받은 사건
 - ✓ 입법의도 고려 - 성인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된 피해 아동이 소년범으로 해석되는 것은 입법의도에 반함.
 - ✓ 아동의 동의는 성인인 가해자에게 이용되고 통제되는 것일 뿐
 - ✓ 법원의 의무 -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발달에 기여할 의무

I 미국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 ✓ 중범죄 인신매매: “타인에게 무력, 사기 또는 강압을 통해 상업적 성행위를 하는 행위와 18세 미만인 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포함
- ✓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 피해자의 안전한 통합 (integration), 재통합 (reintegration), 정착 (settlement)
- ✓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이므로 부적절한 시설에 구금되지 않으며,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도록 함.

I 미국



- U.S. v Seljan, 513F.3d 1203 (2008)
 - ✓ 아동의 성 착취가 인신매매에 해당함이 증명된다면, 법원이 인신매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법적 배상(mandatory restitution) 명령 가능
- 인신매매 범행 관련, 직/간접 발생 재산이나, 범행 조상 시 사용된 부동산 등 재산은 정부가 몰수

I 캐나다



- 아동 성매매 처벌 관련법: 형법, 아동보호법
 - ✓ 성매매 자체는 합법이나 성 구매는 불법
 - ✓ 18세 미만 아동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에 의존해 살거나 이를 지원, 교사, 강요한 경우, 성매매를 위해 협박한 경우 14년 이하 징역
 - ✓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I 캐나다



- (주법)성 착취 아동 보호법 (Protection of Sexually Exploited Children Act)
 - ✓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에드먼튼 주 등
 - ✓ 아동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매매 행위에 노출된 경우
 - 해당 아동은 성적으로 학대, 착취당한 것으로 간주됨
 - 심터로 연계되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 거주 서비스 제공

I 캐나다



▪ 피해자 지원

- ✓ 다양한 관련 기관의 연계 강조
- ✓ 단기적 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적 평가 작업 진행
- ✓ 국가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 아동 성매매 = 아동 성 착취
- ✓ 원주민 아동의 빈곤, 약물 남용, 교육 부족 등의 문제와 연결됨이 지속적으로 확인됨
- 국가적 차원 접근 필요함이 인식됨

I 호주



▪ 주요 관련 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함.

- ✓ 인터넷 (혹은 다른 형태의 소통 방식으로) 아동을 피어내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연방법, 퀸스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타스매니아 등
- ✓ 아동에게 부적절한 자료를 보내 아동을 피어내는 (grooming) 것,
혹은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부적절한 소통을 하는 것: 연방법
- ✓ 부적절한 혹은 음란물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 퀸스랜드, 타스매니아 등

호주



▪ 형법 제472.27조 (연방법)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16세 이하 아동을 유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 (a) 다른 사람에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통
- (b) 이 때 상대방과 성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접근
- (c) 상대방이 16세 이하인 (혹은 16세 이하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 (d) 그리고 전송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호주



▪ 퀘스랜드의 형법 제218A(1)조

: 인터넷 등을 통해 16세 이하 아동을 구하는 행위 (Using internet etc. to procure children under 16)

(1) 퀘스랜드 주 내 혹은 밖에서 성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16세 이하 아동, 혹은 16세 이하 아동이라고 생각되는 성인을 구하기 위해 전자 통신을 이용하는 성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만일 이 성인이 12세 이하의 아동을 구할 때에는 가중처벌 된다. (14년 이하)

- 이 법에서 전자 통신 (electronic communication)은 이메일, 인터넷 채팅방, SMS 메시지, 실시간 오디오/비디오 또는 다른 형태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을 의미함.



III.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

I 유엔 특별절차 제도



-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
 - ✓ 아동의 매매와 성 착취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조사
 - ✓ 새로운 동향에 대해 파악
 - ✓ 아동 매매와 성 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노력에 대해 평가
 - ✓ 아동 피해자의 사회 복귀와 재활 관련, 권고를 내리는 임무 수행
 - ✓ 유엔 특별절차 중 유일하게 아동에 초점을 둔 절차에 해당

I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



▪ 국가적 차원의 노력

- (a) 특히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대한 선택의정서 등 관련한 모든 지역적, 국제적 조약을 비준할 것. 또한 모든 형태의 아동 성매매 및 성범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불법화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 체계를 마련할 것
- (b)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아동 성착취에 대한 수요를 특별하게 다루는 법 체계를 마련할 것
- (c) 아동 성착취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절차는 즉각 착수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I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



- (d)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하여 알선업자, 소개업자, 조력자 뿐 아니라 재정, 기술을 담당하는 자까지 공급 과정에 있는 모든 단계의 기관에 대한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e) 성착취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익과 자산은 피해자를 위한 보상 정책 등 치료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압류하고 몰수할 것
- (f) 국가 법은 성범죄 및 성착취의 아동 피해자가 범죄자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아동은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할 것
- (g) 포괄적이고 적절한 아동보호 시스템에 의하여 아동이 피해를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아동에 특화된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범죄자가 구금, 조사, 기소될 수 있도록 할 것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



- (h) 범죄자의 효과적인 구금, 조사, 기소 및 제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와 교육 전문가, 법 집행 담당자, 파사까지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 훈련을 받도록 할 것
- (i) 형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아동이 소송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아동이 다시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아동에 초점을 둔 아동보호 시스템에 아동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j) 잠재적 범죄를 타겟으로 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확장할 것
- (k) 아동 성착취의 수요에 대한 모든 단계를 조사할 것 - 즉, 직접적인 관계자 뿐 아니라 중개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관계자 모두를 조사하며, 이러한 조사를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포괄적 전략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



- (l) 온라인 범죄와 여성 범죄자 등 범죄자에 대한 연구,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와 성공적인 진행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것
- (m)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있어 아동 피해자를 참여시키고 아동 피해자가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또한, 아동이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로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
- (n) 아동, 사회 전체, 아동 권리 전문가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 성착취 수요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

I 일본



- 2015년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권고 사항
 - ✓ 드 부키치오 특별보고관의 일본 공식 방문
 - ✓ 아동의 성 상품화에 대한 사법적 지도 필요함 권고
 - ✓ 일본 사회 전체에서 성 착취를 사회가 용인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번호사교육문화관 301-1호

Tel. 02-537-5459
Email. gamdong318@gmail.com
Blog. <http://gamdong318.blog.me>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아동 청소년 성매매, 착취의 구조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

토론문 3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토론문 3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1996년 UN은 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 근절을 위한 제1차 세계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UN은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고 이후 2차례의 세계 대회를 열었다.

2008년 브라질에서 열린 3차 세계대회에서 정부와 비정부 기구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아동의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세우기로 결의하였다. 특히 3차 세계대회의 결의 내용 중에는 상업적 성착취에서 상업적이라는 용어를 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아동의 성적 착취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발제자의 발제문 속에 그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다.

3차 세계 대회 이후 아동 성착취 근절과 관련된 화두는 단연 ‘온라인’이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공간이고 국경을 넘나들 수도 있고 집에서 피해자를 물색할 수 있다. 아동 성범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법인 그루밍은 온라인에서도 유용한 수단이다.

성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 협약(란사로테 협약)은 온라인 그루밍을 특정해서 다루는 유일한 국제법이다. 란사로테 협약은 그루밍을 명확히 정의(아동에게 성적인 목적의 제의)하고 있지만 만남 제안이 실질적 행위로 이어지는 물질적 행위(material acts)를 요구한다. 란사로테협약은 주요 시작점으로 의의가 있으나 가해자가 아동을 직접 만날 의도는 갖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루밍 또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성착취와 학대의 대부분이 직접 만남 이전에 시작되거나 온라인상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제실종아동센터(ICMEC)는 각국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법 개발을 권고하기 위해 현존하는 국제 및 국내법 검토하여 모델 법안을 제안하였다.

아동 성착취에 대한 모델법을 개발과 옹호는 전세계의 이 같은 범죄를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무척 중요하다.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ICMEC)에서는 각국에게 새로운 법 개발을 권고하기 위해 현존하는 국제 및 국내법 검토를 시행하고, 196개국을 아우르며 다양한 국가들의 온라인 그루밍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와 자원 건 분, 현존하는 온라인 그루밍 모델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각국의 국내법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적 목적의 온라인 아동 그루밍과 관련한 국내법이 존재한다.

국내법이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 그루밍의 정의를 제공(또는 설명)하고 컴퓨터 용어와 인터넷 용어를 사용한다.

국내법이 오프라인에서 아동과의 만남 의도가 있는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한다.

국내법이 오프라인에서 아동과의 만남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 한다.

국내법이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는 것을 범죄화한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196개국에 현존하는 국내법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판(2017)	
성적목적의 아동 온라인 그루밍에 관한 법	63개국에 법이 존재 그 중 24개국이 5개 기준 충족
온라인 그루밍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전혀 없음	133국에는 그러한 법 부재 그 중 51개국에는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는 행위를 범죄화 하는 법 존재. 82개국은 5개 기준 모두 불충족
컴퓨터 용어와 인터넷 용어를 포함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설명	51개국
아동과 오프라인 상 만남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 (비접촉 학대)	34개국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범죄화	106개국

이 보고서의 모델법률(Model legislation)에서 거론된 근본적인 주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온라인 그루밍에 있어 “아동”을 성적 동의에 관계없이 18세 미만으로 정의
- (2)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하는 “그루밍” 행동을 정의/설명하고, 그 정의가 컴퓨터용어 및 인터넷 용어를 포함하도록 확보
- (3) 국가 형법에 온라인 그루밍 과정에 관한 특정 범죄 생성
- (4) 그루밍 수단으로써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는 것을 범죄화
- (5) 그루밍에 참여한 부모/보호자 처벌
- (6) 아동성범죄에 대한 역외 관할권 제공
- (7) 그루밍 범죄 조사 및 기소 과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아동친화적 과정 제공
- (8) 재범 및 다른 기증 요소(위협, 성적 협박,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처벌 강화

우리 나라는 그루밍을 규제하는 법으로는 유일하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작동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며 실제로 이 법으로 처벌된 사례를 발견하기 힘들다. 청소년 당사자가 신고해야하고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실명인증이 안된 어플리케이션에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이 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경찰이 미성년자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실명 인증이 안되어 문제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앱이라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 성착취가 발생할 사실을 인지한 업체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신고의무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발제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성매매 청소년을 성착취 피해 청소년으로 자리매김하고 알선자들은 UN인신매매방지선택의정서의 기준에 따라 인신매매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아동 청소년 성매매, 착취의 구조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

토론문 4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토론문 4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서론: 성매매를 한 청소년이 아니라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이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지위가 성착취 피해자의 지위까지 논의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것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성매매범죄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동·청소년도 처벌대상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주의가 소년사법의 주요이념이지만 완전하게 처벌이 아닌, 교육대상자의 지위는 아닙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성착취 피해자의 지위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 대상자의 지위=> 처벌이 아닌, 교육 대상자의 지위 => 성착취 피해자의 지위

1. 아동·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 연령과 성매매의 책임

성인의 성관계 의사결정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화간, 성매매, 강간’을 둘러싼 형법적 맥락을 아동·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마련하고 있는 형법적 장치가 13세의제강간죄 규정과 성매매대상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형법상 형벌제외)이다.

그러나 이 두 장치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현대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법감정과도 맞지 않는다. 13세 미만자의 성관계의사결정권만을 무효로 하는 13세의제강간죄의 규정은 13세부터의 성관계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13세 이상은 누구와 성관계를 하여도 자신의 책임

인 것이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4세미만이다. 즉, 사람을 살해해도 형사책임을 지지않는 13세에게 우리는 성관계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제는 아동·청소년의 성구매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성인의 성을 구매한 아동·청소년과 양형 불균형의 문제도 발생한다.¹⁾

그러나 본질은, 성을 구매를 하든, 판매를 하든, 이것은 아동·청소년이 성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을 잘못된 경우이다. 성관계에 대한 가르침 받아야할 시기가 아동·청소년이다. 성매매의 경우, 성구매/성판매 아동·청소년에게 인간관계 맺기와 성관계 맺기, 성관계의 의미, 성상품화의 의미를 가르치면서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과 지지가 이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보다 잘 행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교화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관점에서 교육과 지지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형사제재성격의 문제

우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통해서 연19세미만자(초중등교육기관 재학자포함)의 성을 보호하고 있다. 성매매라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성관계의 의사결정권한을 13세부터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성매매대상이 된 청소년의 경우에는 형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소년원 구금처우부터 사회봉사, 교육이수 등 충분히 형사제재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복지적 처분으로 의료적 보호처분, 양육을 위한 복지적 보초처분, 보호자 위탁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년원처우가 가능한 보호처분에 대한 인식은 형사제재이다.

1)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제7권제2호, 2013, p165-192'에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처우에 관한 토론자의 초기연구로 아동·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의 의미에 관한 문제제기가 제시되어 있다. 성적자기결정의 미숙함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성구매나 판매나 같은 맥락에서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은 강력하게 대두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관점에서의 논의는 '강지명,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정책 동향과 개선방안'(2017년 12월 22일. 한국소년정책학회. 자료집)과 '윤덕경·황정임·강지명·박찬걸, 청소년 성매매 비범죄화와 보호처분에 관한 주요국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을 참조바람.

소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범행 또는 범행을 행할 우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명칭상의 ‘보호’와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도저히 중첩될 수 없는 용어이다.²⁾ 국가와 사회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성착취의 피해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보호와 지원을 해야한다. 이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강지명, 전계논문, 167~168쪽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범행 또는 범행을 행할 우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명칭상의 ‘보호’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도저히 중첩될 수 없는 용어이다.’에서 ‘성매매’를 ‘성착취’로 수정제재함.

